

학교기업 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

- 일 시 : 2007. 7. 19 (목) 14:00~17:00
- 장 소 : 명지전문대학 방목홀
- 주 최 : 교육인적자원부
- 주 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학교기업 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 일정표 ■■■

일시: 2007년 7월 19일(목) 14:00

장소: 명지전문대학 방목아트홀

등 록	13:30-14:00	
개회식		사회 옥준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 개회사	14:00-14:20	정태화(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교육산학협력연구본부장)
· 인사말		변영만 (교육인적자원부 산학협력과장)
발표 및 지정토론		사회 김종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 발표	14:20-15:00	장명희 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지정토론	15:00-15:15	이민호(경희대학교 한방재료가공 학교기업 운영이사)
	15:15-15:30	김영일(두원공과대학 교수)
	15:30-15:45	김근성(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교감)
	15:45-16:00	김한주(한국산업기술재단 산학협력본부장)
휴식	16:00-16:1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좌장 정태화(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교육산학협력연구본부장)
· 종합토론	16:10-17:00	
폐회	17:00-	

■ ■ ■ 목 차 ■ ■ ■

❖ 발 표

학교기업 제도 및 지원 개선 방안 :

장명희 · 정태화 · 옥준필 · 김종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

❖ 토 론

1. : 이민호 (경희대학교 한방재료가공 학교기업 운영이사) | 77
2. : 김영일 (두원공과대학 교수) | 83
3. : 김근성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교감) | 91
4. : 김한주 (한국산업기술재단 산학협력본부장) | 97

발표

학교기업 제도 및 지원 개선 방안

장명희·정태화·옥준필·김종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차례

- I. 서론 · 3
- II. 학교기업 제도 및 운영 현황 · 9
- III. 학교기업 운영 실태 및 제도 개선 요구 분석 · 45
- IV. 학교기업 제도 및 제3기 지원 사업 개선 방안 · 65
- <참고문헌> · 73

I . 서 론

차 례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5
2. 연구내용 · 6
3. 연구방법 · 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학교기업 제도(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는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 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이에 따라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는 부서를 학교 내에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학교기업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04년 8월 학교기업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 2004년 8월에 도입된 학교기업 지원 사업은 학생들의 현장 실습과 교원의 연구능력을 발전시키고,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등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임. 이는 실제 상황의 기업 운영 활동과 학교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통해 현장 지향적 교육이 가능하며, 학교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기획, 운영, 결산 과정에 학생을 참여시킴으로써 학생의 창업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둠.
- 또한 학교기업 활동 결과 수익이 창출될 경우 이를 교육 활동에 재투자함으로써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지급으로 산학협력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한편 학교기업의 활성화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와 같은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제1기 학교기업은 2004년 9월부터 2년간 지원되었으며, 40개 학교(대학교 18개교, 전문대학 17개교, 전문계 고등학교 5개교)가 선정 운영되었음. 이어 제1기 추가학교로 선정된 10개교(대학교 4개교, 전문대학 4개교, 전문계 고등학교 2개교)는 2005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운영되었음. 현재 운영 중인 제2기 학교기업 50개교(대학교 19개교, 전문대학 18개교, 전문계 고등학교 13개교)는 2006년 1월부터 시작하여 현재 2차년도 운영을 하고 있음.

- 현재 제1기 학교기업이 운영을 종료하고 제2기 학교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기업 평가, 운영 결과 보고 등을 통해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어 왔음, 학교기업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입지 제한 및 업종 제한에 대한 규제 개선, 사업자 등록 및 판매, 인센티브 제공 및 지역 내 동종업체와의 경쟁 발생 등에 따른 문제의 개선 요구가 비교적 높았음. 또한 재정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사업 종료 후 기존 참여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의 추가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한 개선 요구도 빈번했음.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제3기 학교기업 지원사업의 추진을 앞두고 현행 학교기업 제도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기업 운영 및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2. 연구내용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정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2-1. 학교기업 제도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한다.

2-2. 학교기업 운영 실태 및 제도 개선 요구를 분석한다.

2-3. 학교기업 운영 및 제3기 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3. 연구방법

3-1. 문헌분석

- 학교기업 제도 및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학교기업 설립에 따른 제도를 살펴보고, 제1기 학교기업 지원사업과 제2기 학교기업 지원사업 제도 간의 차이점을 분석하였음
-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외국의 학교기업 운영 사례 및 시사점을 분석하였으며, 제1, 2기 학교기업을 중심으로 학교기업 운영 현황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학교급별 학교기업들의 개선 요구를 분석 정리함

3-2. 학교기업 제도 개선에 대한 설문 조사 실시

- 설문조사지는 문헌분석 및 학교기업 지원 사업 과정에서 도출된 제도 개선 요구를 토대로 연구진이 개발하였으며, 전문가 검토와 예비조사를 통해 완성하였음. 설문지의 문항은 현행 학교기업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 제3기 학교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요구로 구성되었으며, 제1기 학교만을 대상으로 한 제1기 학교들의 지원 후 운영 실태 항목으로 구성하였음. 설문지 문항의 차이로 제1기(추가 포함), 제2기 학교기업용 설문지를 별도로 개발 활용하였음.
- 학교기업 제도 개선에 대한 설문 조사는 재정지원 받은 제1, 2기 학교기업 참여 학교인 850개교 학교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2007년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전수가 응답하였음. 분석에는 85부 전수가 활용되었으며, 통계처리는 SPSS WIN ver 11을 활용하여 빈도, 백분율,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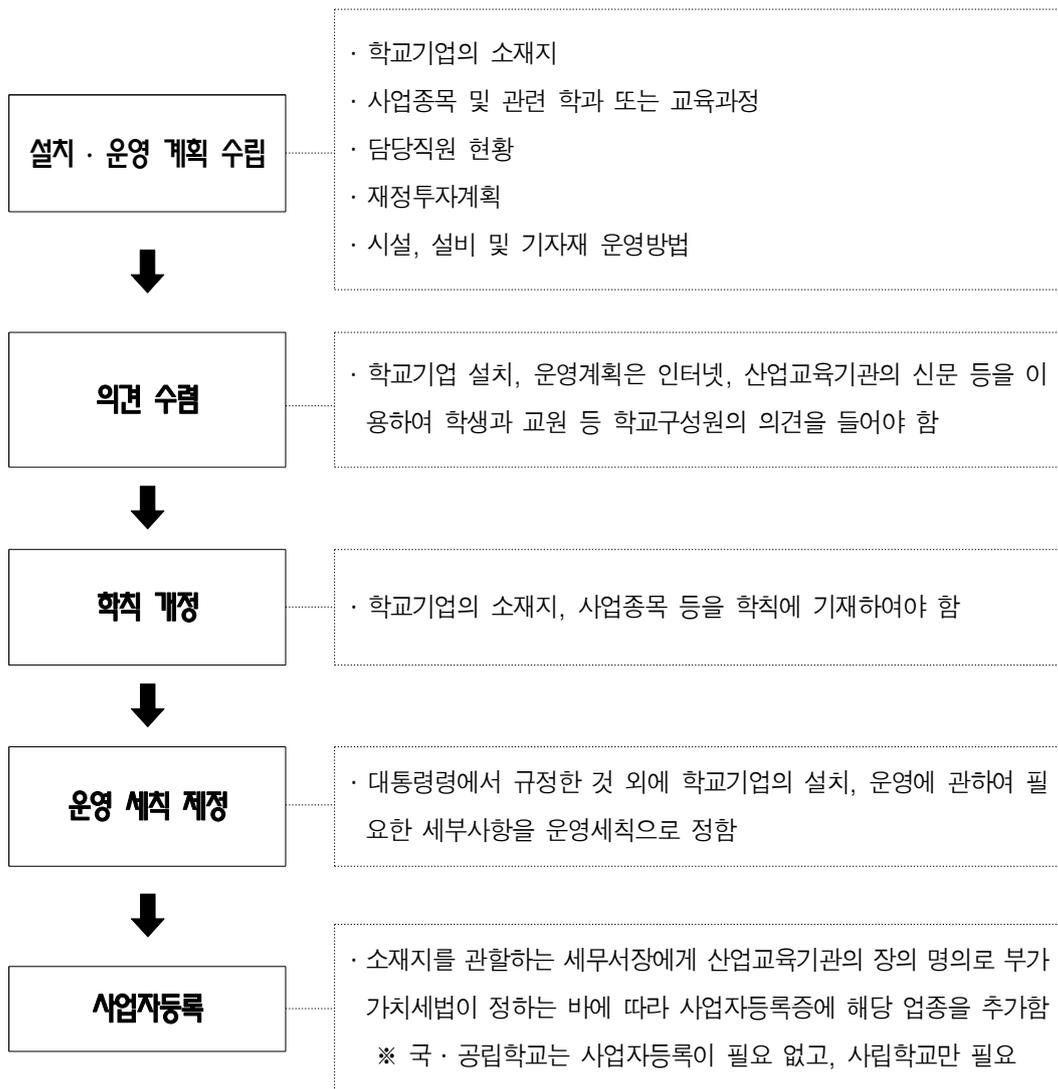
II . 학교기업 제도 및 운영 현황

차 례

1. 학교기업 제도 · 11
2. 학교기업 지원제도 · 21
3. 외국의 학교기업 운영 사례 및 시사점 · 23
4. 학교기업 운영 현황 · 31

1. 학교기업 제도

학교기업 설립 절차 관련 법안은 [그림 II-1]과 같다.



[그림 II-1] ‘학교기업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학교기업 설립 절차

1-1. 사업자등록

- 등록신청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개시전이라도 등록가능)
- 교부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7일에 한하여 연장가능)
- 등록거부 : 사업개시 전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거부

- 직권등록 : 사업자가 신청에 의해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등록말소 :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개시 전에 등록하고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등록말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회수불가능시 등록말소 공시)

- 사업자 미등록시의 제재
 - 매입세액 불공제(등록신청일 기준이며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제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다)
 - 미등록가산세 부과
 - 조세범처벌 - 질서범에 해당되어 5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1-2. 산학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2007년 7월 3일 개정)

제31조 (수입)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학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제36조에 따라 국 · 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5의2.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 라 한다)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6. 그 밖에 이자수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② 대학의 설립 · 경영자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호의 수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3.5.27]

제32조 (지출)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 · 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 · 운영 지원비

4. 제31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5. 제36조에 따라 국 · 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

5의2. 기술지주회사로의 출자

6.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

7.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5.27]

제32조의2.(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 보증 등의 제한)산학협력단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 (지적재산권의 취득 · 관리)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계약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취득 · 사용 및 관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5.27]

제36조 (학교기업) ①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

기 위하여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 · 가공 · 수선 · 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 및 교직원에게 이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학교기업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의 수입으로 하되, 학교기업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1.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산업교육기관 회계(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회계를 말한다)

2. 산학협력단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산학협력단 회계

③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과 그 밖에 학교기업의 설치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5.27]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① 산학협력단은 단독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2. 학교법인(해당 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령으로 정한다.

1.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산학협력단(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 출자할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③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에 대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기술이전촉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 전문기관이 그 가치를 평가하여 법원에 보고한 때에는 이를 「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10조에 따른 조사보고 또는 감정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설립·경영관리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의3(자회사의 설립 등)

① 기술지주회사는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자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

③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제36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④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20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하여 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자회사는 자기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기술지주회사 및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출자를 한 회사는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의4(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① 기술지주회사는 상호 중에 대학의 명칭과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술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상호 중에 기술지주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상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6조의5(이익배당의 사용제한)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그 밖의 수익금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대학의 연구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대학의 연구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한다.

제36조의6(사업교직원의 겸직 및 휴직)

- ① 산업교육기관의 교수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 이라한다)는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직원의 겸직 및 휴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겸직 또는 휴직으로 허가를 받은 산업교원은 이로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36조의7(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술지주회사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36조의2제4항 또는 제36조의6을 위반한 경우
-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36조의8(청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36조의8제2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의9(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1-3. 학교기업의설치·운영에관한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교육기관이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과 그 밖에 학교기업의 설치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기업의 설치 · 운영계획 등) ①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기업 설치 · 운영계획(이하 이 조에서 “설치 ·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기업의 소재지
 2. 사업종목 및 관련 학부 · 학과 또는 교육과정
 3. 담당 직원 현황
 4. 재정투자계획
 5. 시설 · 설비 및 기자재 운용방법
-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설치 ·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인터넷, 산업교육기관의 신문 등을 이용하여 학생 · 교원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설치 · 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설치 ·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 (학교기업의 소재지)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 · 운영규정 제 3조 및 대학설립 · 운영규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시설안 또는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 · 운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학생교육에 사용되는 농장 등의 실습장 부지를 포함한다) 및 대학설립 · 운영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안으로

한다.

제4조 (학교기업의 설치 · 운영비 지출범위)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산업교육기관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기업의 설치 · 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외부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한 기부금은 산업교육기관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및 학교기업의 수
2. 학교기업 관련 학부 · 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수
3. 학교기업 관련 직원 및 학생의 수

제5조 (학교기업의 지원조직 등) ① 산업교육기관은 당해 산업교육기관에 학교기업을 지원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조직에는 학교기업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산업교육기관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 산학협력단의 연구원 및 직원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학교기업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을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의 시설 · 설비,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적절성, 직원의 수 및 인적 구성, 실습여건 및 후생복지 등이 학생의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을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된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을 받기 7일 전까지 산업교육기관의 장과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현장실습학점 등의 인정)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산업교육기관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 · 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4분의 1의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결과를 산업교육기관의 학점 · 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결과를 학점 · 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칙에 현장실습학기 또는 실습기간 및 실습시간에 따른 학점 · 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이수정도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기업의 예산)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산업교육기관의 회계연도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관련된 예산관계법령의 범위안에서 학교기업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의 예산편성 ·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 (학교기업의 회계처리)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학교기업의 회계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기업의 회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 운영계산서 및 자금계산서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 (보상금의 지급)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에서 순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그 수익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의 용도로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순수익 재원의 성격, 순수익 금액의 규모, 관련 직원 및 학생의 학교기업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지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1조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①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으로 설치 · 운영할 수 있는 사

업종목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종목중 별표에 규정된 사업종목을 제외한 사업종목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종목은 당해 산업교육기관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특정의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교육·연구 활동과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② 산업교육기관은 학교법인의 정관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법인의 수익 사업으로 운영중인 사업종목의 경우에는 당해 산업교육기관의 운영 및 학생의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업종목을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8327호,2004.3.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4. 인허가 관련 법규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이고, 허가는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의 경우에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행정처분이다.

실정법상으로는 허가·승인·동의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므로 성질상으로 판단하여 구별하여야 한다. 허가는 사실로서의 행위가 적법하게 행하여지기 위한 적법요건이며, 허가 없이 행한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지만 행위 자체는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하여 인가는 법률적 행위의 효력요건이기 때문에 무인가행위는 무효가 되지만,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아니한다(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인허가와 관련된 법규는 각 법률에 따라 광범위하게 제정되어 있다. 학교기업과 관련된 인허가 법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식품위생법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 건축법	· 불공정거래법
· 식품위생법	· 법인세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자동차관리법 등

※ 상세 내용 확인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2. 학교기업 지원제도

제1기 학교기업 지원사업과 제2기 학교기업 지원사업을 위한 제도 간의 차이점을 분석하면 다음 <표 II-1>과 같다.

<표 II-1> 1, 2기 학교기업 지원사업 제도 분석

항목	제1기 학교기업 지원사업	제2기 학교기업 지원사업
1. 평가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4년도에 재정을 지원받은 40개 학교(대학교 18개교, 전문대학 17개교, 실업계고 5개교)를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중간평가 ◦ '학교기업지원사업 협약서'(2004.9)에 관한 사항 - 제6조의 전임교원 확보율 혹은 학생정원 감축 실적 - 제7조의 성과지표 달성에 관한 사항 ◦ 학교기업 지원사업 운영 성과 관련 사항 ▫ '06년 이후 제정지원 방안 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평가 및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현장 실습과 교원의 연구능력 발전, 산업체로 기술이전 촉진 등 산학협력 활성화 ▫ 학교기업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
2. 평가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운영 계획 수립 ▫ 평가지표 및 평정지침 개발 ▫ 감점 요소 설정 ▫ 평가위원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운영 계획 수립 ▫ 평가지표 및 평정지침 개발 ▫ 가감점 요소 설정 ▫ 평가위원 구성
3. 서류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학교의 중간 보고서를 대상으로 서류 평가 ▫ 현장평가를 통해 확인해야할 내용 추출 ▫ 감점 내용 확인 ▫ 설문조사 분석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학교의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질의·응답(발표회) 및 서면평가

<표 계속>

항목	제1기 학교기업 지원사업	제2기 학교기업 지원사업
4. 현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평가시 도출된 현장 확인 필요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 학교기업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평가 항목 중 현장확인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현장평가
5. 평가결과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의 결과 종합 평가위원 대상의 의견 조사(향후 지원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감점 내용확인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의 결과 종합
6. 학교별 교부 금액 결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20%)–보통(60%)–미흡(20%) 3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지원 ‘우수’학교는 ‘미흡’학교의 심각액(20% 이하)만큼 추가지원(‘보통’은 전년과 동일금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학교급별 대상 학교에서 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3등급으로 차등 지원 ※ 단, 최종 지원금액은 당해 학교의 신청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선정된 50개 학교기업에 대하여 선정 평가시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 계속지원 학교와 신규지원 학교를 분리하여 평가배분
7. 협약체결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6조(학교의 유지조건) ②“을”(고등학교장을 제외한다),“병”은 협약 체결연도 4월 1일 기준으로 전임교원 확보율이 대학 구조개혁 방안에서 정하는 2006년 4월 1일 기준의 전임교원 확보율에 미달할 경우 협약기간 및 그 연장기간 내에 목표 충원율과의 차이의 1/2 이상씩을 매년 개선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6조(학교의 유지조건) ②“을”(고등학교장을 제외한다),“병”은 협약 체결연도 4월 1일 기준으로 전임교원 확보율이 대학 구조개혁 방안에서 정하는 2006년 4월 1일 기준의 전임교원 확보율에 미달할 경우 협약기간 및 그 연장기간 내에 목표 충원율과의 차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8. 국고지원금 집행 적용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특례규칙”, “산학협력 단회계처리규칙”, “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 등 제반 회계관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및 동 특례규칙”,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 등 제반 회계관계 규정
9. 국고지원금 집행업무 처리의 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의 변경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경우, 총사업비(국고지원금+대응투자)중 국고지원액의 10% 미만 금액은 별도 승인 없이 내부 결재로 집행계획 변경 후 집행 	<p>사항 삭제</p>
10. 국고지원금 사업실적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고지원금에서 발생한 예금이자 및 법인세 환급(액)은 당해목적사업에 전액집행(반납 불요)하고, 법인세 환급예정액은 차기연도에 학교기업회계에서 편입하여 집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고지원금 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당해 목적사업으로 우선 충당 사용하되, 집행잔액 발생시에는 반납

3. 외국의 학교기업 운영 사례 및 시사점

3-1 외국의 학교기업 운영 사례

학교급	국가명	학교명	업종	목적	프로그램 구성요소	성과 및 특징
대학교	미국	Cornell University	호텔업	·코넬대 호텔경영학과 학생들의 현장학습을 위함	·학과 50여명의 교수들의 전공분야별로 특화되어 있음	·전체 직원 1 백 명 중 90%가 학생 ·매년 졸업생 전원이 취업할 정도로 학교와 현장이 매우 견고하게 연결됨 ·호텔의 운영 관리는 학생 직원들에 대한 특별한 통제나 제재 없이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이뤄짐
	중국	칭화대학교	·칭화동방 : IT업체, 환경사업	·학업 ·과학연구 ·사회복무	·IT분야 : 컴퓨터, 서버, 소프트웨어 온라인 교육, 그리고 전자통신 방면 ·환경분야는 인공환경(에어컨), 대기환경, 수질환경, 환경미화(시내조명 등 도시 미관분야)로 사업 분야	·중국 IT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업체로 가장 성공적인 산학협력 사례로 많은 외국 대학 및 기업의 벤치마킹 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는 기업
			·칭화자광 : 생물학 등 첨단 생물공학 분야 업종		·칭화자광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전달하여 교수 및 연구원들과 함께 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수행	·기술과 상품의 선진화를 모토로 칭화대학 및 중국 기업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 520여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음 ·교수들이 학생과 기업 간의 다리 역할
		북경대학교	·북대방정 : 중문 전자출판, 문자식별 기술 개발,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등으로 주로 IT 산업을 중심	·1988년 5월 북경대학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창업한 중국 제1의 대표적인 교관기업	·지식부광 프로젝트 : 대학-기업간 산학일체 프로젝트 ·대학생 창업스쿨 : 학교가 직접 창업을 적극 지원	·중국 '전국 120개 대기업', '전국교신 기술 10강 기업' 등에 들어 있고 외국의 DEC, IBM, INTEL, APPLE, FUSITU 등과 다양한 합작관계를 맺고 있음 ·정부지원금이나 외부 기부금에 의존하지 않고 마음껏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음 : 북경대학의 연간 총수입 중 96%가 북대방정의 경영수입에서 나오고 있음

<표 계속>

학교급	학과명	제도명	정책업종	목적	프로그램 구성요소	성과 및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대학인 북경대학의 다양한 전공과 사회적 네트워크로 산학협력을 이끌어 가고 있음 ·전자출판분야에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오늘날 북대방정의 엄청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함
전문대학	미국	Rowan-Cabarrus 전문대학	유아교육 교사 취득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교육 교사 취득과정으로 1년 과정에 의한 디플로마 자격증이나 2년 과정에 의한 응용과학 전문학사(Associate in Applied Science)자격증 취득이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학습요소 : 유아기아 아동기 그리고 특수아동에 대한 교과과정 ·현장학습요소 : 유치원 환경에서의 유아교육 현장 실습 ·학교와 현장의 연계활동 : 지방정부와 공식적인 중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가 여학생이며 33%만 졸업 하지만 100%의 취업률 ·학생은 주로 30대 초반의 여성들이며 자격증 취득관련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학생이 많음 ·학교의 모든 교수진은 여성이며 실무 경험을 갖고 있음
		Wenatchee Valley 전문대학	2년제 응용과학 준학사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예와 과수 묘목 생명 과학분야의 농업 생산 실무를 직접 몸으로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교육 30%, 나머지는 원예와 농업생명과학에 관한 과목 ·2학년은 과수원 현장에서 400시간-8학점의 인턴 과정을 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학생들이며 등록학생의 평균연령 28세, 50%의 졸업에 100% 취업률 ·학교는 지역 과수 원예 농민과 상품포장업자, 상품수송업자 등 지역기관 단체들과 협약을 맺고 있으며 모두 프로그램 지원에 적극 참여 ·Tech-Prep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 고등학교와 연계협약을 맺어 고등학교에서 과수원에 코스를 이수한 학생을 전문대학에 입학시켜서 준 학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나아가서 일반대학으로 편입하는 과정까지 연결
		Northwestern Michigan 전문대학	호텔/휴양지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텔 경영과 휴양시설 경영에 대한 응용과학 준학사 학위 과정으로 지역 로터리클럽이 운영하는 고급호텔 시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학년은 학교에서 기초교양과목과 호텔현장에서 기초실습을 배움 ·2학년은 호텔에서 주당 30시간 호텔 업무와 객실업무실무를 배움 ·고급호텔은 산학협동 차원의 교육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교수는 호텔 근무경력과 지역의 사설 요리학원에서 강의 경력 ·식당은 구내에 있는 회의장에 부속된 것이며 학교가 경영하는 기업

<표 계속>

학교급	국가명	학교명	업종	목적	프로그램 구성요소	II. 학교기업 성과 및 운영 현황 31
				학교 내 회관의 식당을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함	며 식당은 학교 내 기업 형태의 교육	
		Rock Valley 전문대학	Tech-Prep과 도제교육의 복합형태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제조기술을 교육하여 전문대학에 진학하게 한 후 계속적으로 공식적인 도제교육에 참여하게 함	·학교학습요소 : 직업교육과 학술교육의 통합형 교육과정 ·현장학습요소 : 제조기술자 자격인증을 위한 2,000시간의 현직훈련 제공 ·학교와 현장의 연계활동(다수의 중소기업체를 포함하는 공식적인 통솔기구	·학교 밖의 제조업 부문 기업을 학교교육의 연장선상에서 강력하게 대학과 연계시킨 형태로서 내용적으로 “학교 내 기업” 혹은 “기업 내 학교”로 봄
	중국	대만명신 기술학원	군사용 적외선계통을 설계 및 처리	·산학 협력과 사회자원을 이용해서 기술직업교육을 실시 ·적외선고과학기술의 도입 및 강화	·학교학습요소 : 야간과정에서 엔지니어링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학습 ·현장학습요소 : 주간에 학교기업에서 근무하면서 현장경험을 통해 실무경험을 습득함 ·학교와 현장의 연계활동 : 학교기업의 책임자가 야간부 과정의 학부장을 겸임하고 있음	·미국지명광전회사와 동맹을 맺고 공동으로 「실온형 적외선 열상 영사기」를 연구개발 ·광전기술의 응용을 위한 산학관 협력을 통한 직업기술교육을 통해 광전공업의 발전에 노력
고등학교	미국	Cherry Creek 고등학교	카페테리아		·모든 판매담당 학생은 일정한 교육과정 동안 자신이 정하는 자유로운 시간에 카페에서 일하고, 학생 매니저들은 운영 이익에서 보상을 받는 체제 ·상급학생들은 카페에서 자신들이 일한 만큼의 현장실습 학점 인정	·판매 부진과 적자로 폐점한 카페테리아를 학교에서 인수함 ·마케팅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이후 이 카페는 학생들이 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을 줌
		Rothsay 고등학교	철물점과 목재소를 결합한 Storefront			·지역사회와 학교기업의 관계를 변화시켜 지역사회 자체가 학교가 되는데 기여함 ·이 사업의 운영으로 학생들은 의미 있

<표 계속>

학교급	학교명	사업명	정책업종	목적	프로그램 구성요소	성과 및 특징
						는 교육 기회를 얻었고, 아울러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하게 됨
	Walker 고등학교	쿠키 판매점			·학생들은 각자가 자신들의 주당 책임량을 할당하고, 다른 동료들과의 협력을 통한 팀워크 체제로 일함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필요한 사업기술을 배우게 됨 ·학교기업에 발생하는 수익은 사업을 유지·확대시키고, 사업과 관련된 제반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
	Mt. Edgecumbe 고등학교	훈제 언어		·태평양 연안지역 중심의 상업과 문화 사업에 학생들이 참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발	·학습요소:TQM(Total quality management) 기술, 기업관련 기술, 직업준비 기술 등을 학습 ·영어, 사회연구, 과학, 수학 등을 포함한 학문적 교육을 받으며, 러시아어와 아시아어, 컴퓨터 등의 교육과 정도 이수 ·연계과목 : 기업가정신, 경영학응용 '기업가 정신'과목 - 훈제언어의 생산 공정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 '경영학 응용'과목 - 회사 재무관리, 세금처리 및 법적 문제의 해결방법	·회계정리 방법,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동경까지의 운송방법, 수출입 법령 등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3년마다 교사와 학생으로 구성된 팀을 일본에 파견하여 훈제언어 판매전략을 연구
	Mt. Diablo Valley 고등학교	레스토랑		·학생들에게 전문대학으로 진학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	·Tech Prep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대학 연계 ·학생들에게 대학에 익숙하도록 "Summer Bridge" 프로그램을 제공 ·적어도 16세인 학생들은 8주동안 일 주일에 한번 단 \$3로 대학 과정을 이수	·학교기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1년 후에 학점이 증가 ·Tech Prep 커리어 경로와 2+2 협약을 포함하고 있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일부 대학 과정을 이수하도록 함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고무시키는 역할
	Selma 고등학교	화훼 소매업				·지역사회 파트너십의 참여 가능

<표 계속>

학교급	국가명	학교명	업종	목적	프로그램 구성요소	II. 학교기업 성과 및 운영 현황 33
						·Selma 보육센터, Selma 상공회의소, Valliwide 은행, Federal Land 은행 및 Theilen 광고회사 등이 학교기업에 참여 ·이러한 회사들이 학생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
		Belmont 고등학교	·Blue and Gold : 학교 신문사 ·Tiger Radio : 라디오 방송국			·학교기업의 경험이 학문적 성취를 제고
	중국	시안양 (Xianyang) 공장기계기술 학교	공구생산	·숙련노동자와 전문기술자의 훈련	·수학기간은 4년 ·학교에서는 이론적 학습을 수행하기 위한 실습실 운영	
		바오핑시 (Baofensi) 중등입업 학교	아몬드 재배 및 생산	·아몬드의 생산량 증가가 목적	·영농에 관한 과학적인 이론을 가르치는 동시에 과수 접목법과 가지치기 기술교육 ·식물의 질병예방과 해충 박멸에 관한 생·화학적 지식 제공	·“샌드위치 학습”방식 ·바오핑시 중등입법학교는 인근 17개 마을에 기술을 제공하고 있음
	인도	Vigyan Ashram 서비스/제품 센터	현장서비스	·교육의 관련성을 향상 ·학교를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경제적 단위형성 ·학생들이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기업가 정신 장려		·생산을 겸하는 서비스/제품 센터는 작은 시골 지역에서 유용한 프로그램 ·현재의 직업교육을 보충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

<표 계속>

학교급	학교기업	제도개선	정책업종희	목적	프로그램 구성요소	성과 및 특징
		Shantikunj Ashram 생산센터	양초제조, 밀랍분필, 고무도장, 사진박판 등 많은 소규모 기업 구성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 수행을 위함 ·학생들에게 기술훈련을 제공하고, 부수적인 생산물과 이익을 제공		

* 출처 : 김성희(2005), 「대학에서의 학교기업 활성화 방안 -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광양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문미영(2006), 「학교기업 프로그램과 산학협력 관계에 관한 연구 - 실업계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윤은희(2003), 「학교기업 운영 실태와 참여 학생들의 인식도 조사를 통한 학교기업 운영 방안 연구 - 실업계고등학교 학교기업 참여 학생들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Gehrke, J. F. (1998). A descriptive study of school-based enterprise programs in support of the california school-to-career pl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La Verne
McKoy, D. L. (2000). Inside school-based enterprise: Productive environments and enterprising mind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3-2 시사점

- 중국의 학교기업과는 달리 미국에서의 학교기업은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 법령 (School-to-Work Opportunities Act)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고숙련·고임금의 직업으로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
-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 시스템은 학생들이 학교기반 학습(school-based learning) 및 일 기반 학습(work-based learning)을 유치원부터 대학 졸업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전반에 걸쳐 학습이 일관된 연계 속에서 통합 될 것을 요구함.(출처

- 일과 관련된 지식을 통합하는 세 가지의 주요 항목으로는 1) 일 기반 학습(work-based learning), 2) 학교기반 학습(school-based learning), 3) 관련 활동 (connecting activities)이 있음, 일에 기반 한 지식은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일의 능력을 제공하며, 학교기업의 활동은 학생들이 변화하는 일의 세계에 대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짐.

- 3-1에서 제시한 학교기업의 사례들에서는 학교기업에의 참여를 통해 일반적인 업무 능력이 개발되며. 이러한 능력을 통해 학생들은 심화교육과 취업을 준비하게 된다는 점임. 학교기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산업의 연구, 생산, 자금 분석 및 회계 등을 배우게 되며, 인문 및 직업교육을 범 교육과정이나 프로젝트 중심의 과정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는 교육과정의 연계 적용이 아직 원활하게 정착되지 못한 우리의 학교기업 실정을 고려할 때 체계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현장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이 필요함.

- 일부 학교기업은 프로그램의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며, 학교기업의 운영비 자체가 풍부하지 않으므로 학교기업은 학교 구(school district)에 도움을 요청함. 이는 최근에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전문계고교에 대해 적은 시드머니를 지

원하여 학교기업을 통한 실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실정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 일부 학교기업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시간 이외에 추가적으로 일을 할 경우에 임금을 지급하게 됨.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학생들은 종종 다른 혜택을 받곤 하는데 이러한 혜택으로는 장학금, 주 및 전국 컨퍼런스 참여비 지원, 학생 조직 지원 등을 들 수 있음.
- 학교기업의 성과로는 학생들의 일에 대한 몰입도 제고, 지역사회에 대한 흥미 제고, 향상된 학점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고무, 일반적 능력과 기술적 능력을 습득하도록 하는 욕구 증대, 일의 세계나 중등 후 교육으로의 원활한 이행 등이 포함됨. 또한 학생들의 학점, 졸업률, 대학 진학률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Tiger Radio와 Blue and Gold와 같은 학교기업들은 “학습을 위한 사회적 기업” 을 고려해야 함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음,

4. 학교기업 운영 현황

4-1. 국내 학교기업 지원사업 현황

4-1-1. 대학교 학교기업 지원사업 현황

학교명	학교기업명	사업종목	비고
강원대학교	BR미디어프로덕션	방송영상물제작	제1기
경상대학교	경남동물과학기술	기타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	제1,2기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한방재료기공	한방식품, 건강기능성 식품 제조·가공업	제1,2기
광주여자대학교	뷰티클리닉센터 플로라	미용업	제1기
대구한의대학교	화장품공장	한방 화장품 제조업	제1기
대불대학교	에코마린	중·소형 해양조선선박개발업	제1기
동서대학교	동서필름	방송영상물제작	제1,2기
배재대학교	옷칠데코아트센터	나전칠기 가구 및 제품 제작	제1기
부산대학교	경량부품가공센터	조정밀시스템 및 부품 제작	제1기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터	종합오락운동시설 운영업	제1기
순천향대학교	순천향심마루	제과·제빵 제조업	제1기
인천대학교	클린에어나노테크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제1,2기
전북대학교	전북대햄	축산물 가공식품 제조업	제1,2기
충남대학교	CNH Biotech	기능성쌀, 사료첨가제, 건강기능식품(홍삼추출액) 제조업	제1,2기
충주대학교	바이오식품	약용버섯 이용 기능성 식품 제조업	제1기
한경대학교	한경디자인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및 제작	제1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에스이텍	반도체용 폐실리콘웨이퍼를 활용한 박막웨이퍼 제조업	제1,2기
호남대학교	HIMEC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	제1기
조선대학교	FMS	자동차부품제조업	제1기추가
건양대학교	한나래	봉제 의복(한산모시 상품화)	제1기추가

<표 계속>

학교명	학교기업명	사업종목	비고
한국해양대학교	마린에듀텍	선박기반 조사연구 용역사업, 해사기술 교육개발사업	제1기추가
한남대학교	린튼 바이오	농업용 화학제품 연구 및 개발업	제1기추가
군산대학교	천연염색디자인 학교기업	옷나무 염색 디자인 상품제작	제2기
남부대학교	앤비팜 (NB Pharm)	건강보조용액화식품	제2기
동명대학교	라츠인터랙티브	게임개발 및 교육	제2기
서울산업대학교	캡스톤디자인 학교기업	미니SEM, 교육용 로봇	제2기
영동대학교	Y-Tech	홈넷기기, 리모컨	제2기
영산대학교	영산MC	영상/인쇄/미디어콘텐츠 제작	제2기
창원대학교			제2기
충북대학교	동물의료센터 학교기업	동물진단 진료업 및 병성감정용역사업	제2기
한국외국어대학교	i-외대	교육 서비스	제2기
한밭대학교	실내환경전문클리닉 학교기업	실내공기질 측정(용역서비스)	제2기
한세대학교	HAT(Hansei Assistive Technologies)	아이코마우스(코마우스-장애우용), 블루톤(음성보조기) 및 기술용역	제2기
전체		33개교	

4-1-2. 전문대학 학교기업 지원사업 현황

학교명(전문대학)	학교기업명	사업종목	비고
경남정보대학	SHOE-KIT	기능성 특수 신발 제조업	제1,2기
경북전문대학	바이오 푸드	약용버섯 이용 기능성 식품 제조업	제1기
대구과학대학	레꼴	제과제빵 제조업	제1기
대덕대학	D2E 로보틱스	로봇완구제조업	제1,2기
도립강원전문대학	ubiquitous 강원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제1기
동의과학대학	동의분석센터	성분검사서비스업	제1기
두원공과대학	두원정밀	초정밀금속가공업	제1,2기
마산대학	노인전문요양원	노인수용복지시설 운영업	제1,2기
백석문화대학	백석만나베이커리	제과제빵 제조업	제1기
송원대학	스웍스	자동차 정비업	제1기

<표 계속>

학교명(전문대학)	학교기업명	사업종목	비고
순천청암대학	청암식품	전통 식품 제조·가공업	제1기
영진전문대학	영진모빌스	IT 및 모바일 시스템 개발업	제1,2기
우송공업대학	우송오토테크	자동차 정비업	제1기
장안대학	장안주얼리	주얼리 가공·제조업	제1기
전남과학대학	Geo-Tec	건물 및 토목설계 서비스업	제1,2기
전주기전대학	JKFOOD	전통 장류 제조업	제1기
창신대학	창신대학RP	정밀측정 및 3차원 제품 가공업	제1기
동명대학교 (구동명대학)	아시아파워엔진	첨단교육기자재(분사시스템 시뮬레이터) 개발 및 생산, 미래형 자동차 신부품(자동차 전장장치) 생산	제1기추가
영남이공대학	영남이공대학 자동차기술센터	자동차 수리업	제1기추가
한국관광대학	한국관광대학식품산업 (한광베이커리)	빵 및 곡분과자제조업	제1기추가
한양여자대학	니트연구소	니트의류제조업	제1기추가
가톨릭상지대학	가톨릭상지대학	떡류	제2기
강릉영동대학	참소리 오디오	진공관 앰프(Vacuum tube amp)	제2기
거창전문대학	U-테크홈	정류기 제조, 무선통신응용장치제조, 전자시계제조	제2기
경기공업대학	고정밀계측기술센터 학교기업	시작품의 시험, 측정	제2기
계명문화대학	KMC웨딩	예식장, 드레스대여, 사진촬영 및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웨빙 이미용	제2기
공주영상대학	공주영상기술	영상콘텐츠, 공연 및 기획 등	제2기
김천대학	향토식품개발원	자두가공품	제2기
명지전문대학	MJ정보기술 학교기업	호스팅·SI·콘텐츠 등	제2기
부산정보대학	학교기업 BCS	자동차부품 재생	제2기
수원여자대학	식품분석연구센터	과학기술서브사업(식품위생검사기관,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제2기
안동과학대학	안동문화촌	하회탈 문화상품 4종	제2기
충청대학	엔컴패스	공연관련 문화산업	제2기
전체	33개교		

4-1-3. 전문계고 학교기업 지원사업 현황

학교명(전문계고)	학교기업명	사업종목	비고
거제공업고등학교	거공테크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제품 제조업	제1기
대구서부공업고등학교	대구서부공업고등학교	자동화 유연 생산시스템을 이용한 제품가공	제1기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스쿨모터스	자동차 정비업	제1기
충북공업고등학교	충북테크 푸르메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제1기
학산고등학교	학산제과점	제과제빵 제조업	제1기
구례농업고등학교	섬지뜰 친환경기업	제과 제빵	제1기추가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충기학교기업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조업	제1기추가
경남자영고등학교	경남자영고 참살이 농산	새송이 버섯, 상황버섯 및 버섯 엑기스	제2기
경주공업고등학교	경주하이테크	자동차부품 및 금형부품 가공	제2기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카 뷰티샵(Car Beauty Shop)	자동차 종합정비공장(판금도장전문)	제2기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동락테크	기계가공 절삭부품	제2기
동래원예고등학교	원예마을	화훼(국화, 초화, 난, 야생화 등)	제2기
부산영상고등학교	영상미디어	영상물제작	제2기
서울북공업고등학교	GOOD CIS	캐릭터 및 팬시 도자기	제2기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솔라파워	태양광발전을 이용한 친환경 전기 생산	제2기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여농 에듀팜	유기축산배합사료, 소시지, 요구르트, 치즈	제2기
충남인터넷고등학교	디지털조이	디지털콘텐츠(영상, 이러닝)	제2기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STAR 주얼리	귀금속장신구 제조 판매	제2기
한국테크노과학고등학교	하이테크노 학교기업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전국 초·중·고등학교 모바일스쿨 개발·보급)	제2기
전체		19개교	

4-2. 비재정지원 학교기업 운영 현황

4-2-1. 대학교 학교기업 지원사업 현황

학교명	학교기업명	사업종목
강원대학교	풍력발전	발전업, 연구 및 개발업
강원대학교	에코포리스트	농업, 임업
강남대학교	강남대학교학교기업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컴퓨터 주변기기
경상대학교	GAMC	동물진료검진용역사업
경희대학교(서울캠)	학교기업 베이커리경희	제과점영업
나사렛대학교	언어청각센터	서비스-언어교정
나사렛대학교	플로리아 나사렛	소매업-화훼
관동대학교	관동대학교 유니버스텔	호텔업
단국대학교	단국대학교 기업DKU푸드	축산물가공, 가공품
대전대학교	웰니스아카데미학교기업	피부, 비만, 요가, 휘트니스클럽
동서대학교	애니모션	애니메이션 제작
목포대학교	학교기업 바이오플러스	천일염 및 전복
부경대학교	식품가공센터	제조업
부산외국어대학교	랭귀지파크	교육서비스업
영산대학교	영산TC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영산대학교	꿈꾸는 바디쉐	빵류제조업
위덕대학교	그린푸드	제과-제빵
인덕대학교	인덕대학 IJ 주얼리	제조 소매
전북대학교	전북동물의료센터	수의업
전주대학교	궁중약고추장0	장류
제주대학교	바이오텍	식품제조
진주산업대	어린이생명과학교실	교육사업
진주산업대	유팜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진주산업대	공기질 검사센터	물질성분검사업
중부대학교	행복한 아침	제과-제빵
중부대학교	로하스생명과학연구소	화장품제조
탐라대학교	탐라대학교 학교기업	비금속광물제품
포항공과대학교	NSB POSTECH 학교기업	연구용 진단키트 제조
계	총 22개교(28개 학교기업)	

4-2-2. 전문대학 학교기업 지원사업 현황

학교명	학교기업명	사업종목
가톨릭상지대학	씨티파크	서양 음식점업
경남정보대학	KIT 프로베이커리	휴게음식(제과점업)
경남정보대학	KIT 바이오웰푸드	식품제조, 가공
경도대학	라오닐	자동차종합수리업
계원조형예술대학	창작가게학교기업	창작예술품
군산간호대학	봉정요양업	군산간호대학 학교기업 봉정요양원
대덕대학	엠디엠	제조(무기부품, 특수기계부품)
대덕대학	df021	건설(실내장식), 서비스(광고업)
대덕대학	대덕RFID	제조(RFID장비 및 소프트웨어 개발)
동부산대학	동남식품개발㈜	수산물가공
동아방송예술대학	이스타픽처스	방송프로그램 제작
동아인재대학	동아팻토피아	애완용품
명지전문대학	아트세라믹	도자기 제조업
문경대학	모닝힐 베이커리	식품적객업
부산경상대학	영상미디어센터	영상제작
부산경상대학	스타일발전소	라이프스타일 관련 제비지니스 및 취업양성교육
부산경상대학	디지털포켓	애니메이션 CF 제작
부산경상대학	바이링구얼라인	재학생 및 취업대상자 외국어교육 및 온라인 및 오프라인 외국어교육
부산정보대학	BIT베이커리	제과-제빵
부산정보대학	BIT검안센터	안경소매업
부산정보대학	秀 헤어샵	미용업
서라벌대학	선도	일본 음식점업
송곡대학	SGS(송곡시스템)	서비스
수원여자대학	푸드코트센터	단체급식업, 베이커리
수원여자대학	식품개발센터	베이커리
신성대학	신성대학 환경연구소	서비스업
양산대학	양산대학학교기업	제조
안양과학대학	안양 사이언스텍	전자부품제조업
	안양과학대학 벤처센터	경영상담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인덕대학	IJ JEWELRY	귀금속 장신구 등 문화상품 등
인하공업전문대학	인하지오인포텍	소프트웨어 개발
전주기전대학	J.K외식사업	음식업
전주기전대학	JK투어	여행업/유학알선
천안연암대학	천안연암대학 학교기업	기타축산업, 음식점업, 미용업
계		총 23개교(34개 학교기업)

4-2-3. 실업계 고등학교 학교기업 지원사업 현황

학교명	학교기업명	사업종목
대구달서공업고등학교	대구달서모터스	자동차부분정비업
광주공업고등학교	디오아이티	광통신수동형부품 제조업
동호정보고등학교	동호고투어학교기업	국내여행사업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부산기공테크학교기업	그외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부산디자인고등학교	부산디자인고등학교학교기업	공예품, 도예품, 영상출판
부산자동차고등학교	부산자동차고기계부품가공	기계부품가공업
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	스쿨베이커리학교기업	제과·제빵
부산컴퓨터과학교등학교	컴과고BIZ학교기업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 관련업, 일반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선린인터넷고등학교	선린인터넷고등학교학교기업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및 유통업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I-SIGN	출판·인쇄
인천여자 공업고등학교	인천여공고D&C	출판·인쇄
계	총 9개교(9개 학교기업)	

4-3. 제도 개선 요구

- 다음은 '06년 제1기 학교기업 지원사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학교급별 '학교기업 지원 사업' 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학교기업협의회별로 회원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정리하여 제시한 것임.

4-3-1. 대학교

- 대학교의 학교기업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문제점	개선방안
2년간의 짧은 국고 재정지원으로 자생하는 시스템 구축이 어려움.	4년 정도의 기간 동안 지원을 하되 매년 철저한 감사로 잘 운영을 하는 곳은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잘 운영이 안됐다면 지원 삭감으로 학교기업 지원사업을 운용했으면 함.
학교기업에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연수) 부족	학교기업 실무자들이 실제 회계나 학교업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학교기업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연수)을 매년 6회정도 함으로써 업무능력 향상이 필요함.
학교기업 공유 커뮤니티 부족	학교기업 운영에 대한 노하우 공유 및 커뮤니티를 만들어 활성화 했으면 함.
학교기업과 학교의 운영 패턴의 차이로 인한 업무 손실	학교기업의 운영에 있어 학교의 학사 일정 운영과 맞춰서 진행해야 함으로 인해 기업의 업무적 능률이 떨어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운영전반적인 독립이 필요하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장기적인 계획 없이는(자금 지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학교기업 현장 실습장 개발에 어려움.	장기적인 계획 없이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학교기업 현장 실습장 개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자금 지원 등 시스템 지원
1차년도가 종결된 후 2차년도 1월에 중간평가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일정부분의 예산집행의 차질이 우려	12월에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2차년도 지원금 교부를 연초에 집행해줌으로써, 연말에 차년도 대응투자금 및 국가지원금의 예산편성시 배정금액 한도에 맞게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또한 신속한 예산투입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시기에 맞게 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임
학교기업의설치·운영에 관한규정(대통령령) 제3조(학교기업의 소재지)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3조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시설안 또는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학생교육에 사용되는 농장 등의 실습장 부지를 포함한다)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안으로 한다.	학교기업의설치·운영에 관한규정(대통령령) 제3조(학교기업의 소재지)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3조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시설안 또는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학생교육에 사용되는 농장 등의 실습장 부지를 포함한다)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안으로 한다. 단, 학교기업 운영을 위한 교지 밖의 시설과 장소를 활용할 수 있다.
학교기업의설치·운영에 관한규정(대통령령) 제8조(학교기업의 예산) ①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학교기업의설치·운영에 관한규정(대통령령) 제8조(학교기업의 예산) ①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표 계속>

문제점	개선방안
<p>산업교육기관의 회계연도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관련된 예산관계법령의 범위안에서 학교기업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의 예산편성·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산업교육기관의 회계연도와 기업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학교기업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의 예산편성·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학교기업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증 없이 대학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고 있음(사립대학 경우).</p>	<p>총장 명의의 학교기업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교육부장관의 고시 또는 관련부처(교육부, 직능원)의 지침)</p> <p>(참조) 1. 현재 일부학교기업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으로 사업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요구됨. 2. 학교기업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면, 학교기업운영 애로사항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됨. 3. 세무전문가들의 견해는 학교기업 별도사업자등록에 문제없다고 함. 4. 별도 사업자등록시 대표자는 총장으로 함이 학교기업설립취지에 부합함.</p>

4-3-2. 전문대학

○ 전문대학의 학교기업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문제점	개선방안
<p>2년간의 재정지원 사업으로 2006. 8. 31. 1기 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로부터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임(전담직원의 고용 및 신분 문제, 교비의 지속적 재정투입 문제 등)</p>	<p>학교기업의 재정 자립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전담직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막대한 교비투자가 발생함으로써 대학 당국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p>
<p>학교기업을 통한 현장실습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있으나, 현장실습 운영비(강사료, 재료비 등)의 지속적인 투자가 어려움 실정임</p>	<p>학교기업을 통한 많은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학교기업현장실습운영지원사업』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현장실습 만족도 향상과 맞춤형 현장기술자 양성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요망</p>
<p>사업자등록증 관련 영업활동 불편사항 발생</p>	<p>사업자등록증 상에 학교기업명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p>

<표 계속>

문제점	개선방안
	관계로 정부 및 민간기관의 서류제출시 독립사업체로서의 불인정됨으로써 영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별도의 사업자등록증 발부를 할 수 있는 제도개선 요망(예: 산학협력단 별도 법인)
정부기관 공개입찰, 인증제도시 독립업체로서의 자격 미달	정부기관에서 발부되는 인증제도(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혁신개발과제 등)를 신청할 시 독립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신청할 수 없음. 이에 독립기업체로서의 자격 부여 요망

4-3-3. 전문계 고등학교

○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교기업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문제점	개선방안
채용 교직원의 고용불안(재고용 기피 및 해고)	한시적(2-3년간) 재정지원(최소의 인건비)
학교기업 운영 관리비용 부담	한시적(2-3년간) 재정지원(최소의 운영관리비)
담당 교사의 업무 과중(주당 수업시수 평균 20시간 외 학교기업 업무 및 담임 또는 보직업무 수행)	전담 교직원의 T/O 증원 및 수업시수 경감 대책 마련(보직 및 담임 업무 경감)
참여 학생 및 교직원의 보상책 미흡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법, 조례 제정) ※ 학교기업의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18327호(2004. 3. 22) 제10조 (보상금의 지급)고교의 경우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순수익에서 수익으로 개정 또는 예외 규정 개정
담당 교직원의 인사인동으로 인한 영속적 운영이 어려움	담당 교사의 전보 유예 제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별 인사 규정 개정
참여 전담학생의 인원변동(졸업등)으로 인한 기술 축적이 어렵고 반복적 교육훈련 노력 필요	학교기업 동아리 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지도교사의 인센티브 및 동아리 활동 예산 지원)
방과후(시간외) 학교기업 운영에 따른 교직원의 업무가중	지도교사의 지도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침 마련 및 방과후 학교기업내 현장실습의 수업 시수 인정
국고 재정지원 종료후 학교의 학교기업 운영의 관심과 열의 부족	- 학교평가시 가산점 부여 및 차등 예산지원 - 우수 운영 사례 발굴 및 선도적 학교기업운영교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 시범학교 지정 지원

<표 계속>

문제점	개선방안
학교기업 교육훈련비 지출 부담으로 인한 교육 훈련의 축소	재정지원 종료시 교육 훈련 예산 지원
공립학교의 경우 비영리 사업자 등록(고유번호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움	독립적인 사업자 등록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정치 마련
학교회계에 포함 운영되어 회계 관리가 복잡함	독립회계 운영으로 예산 집행의 신속성 및 탄력성 부여

4-3-4. 국공립 대학(교)

○ 국공립 대학(교)의 학교기업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문제점	개선방안
학교기업 목적달성과 수익창출과의 운영상의 상충	학생들의 현장실습 위주로 운영하는 학교기업(현행)과 수익사업을 위주로 운영하는 학교기업을 도입하여 학교실정에 맞도록 운영
수익이 있어야 학생들의 실습활동지원 및 재투자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학교기업운영이 가능	수익사업을 위주로 하는 학교기업을 활성화하여 기반이 확립되면 교육형학교기업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기업은 학교조직이지만 동 업무를 산학협력단에서 관장함으로 업무추진에 혼란 - 인사, 자산관리, 학교기업관련 행정처리 등에 혼란 - 학교기업과 산학협력단과의 관계정립이 필요 	학교기업의 설치부터 운영까지의 업무편람 및 로드맵 필요(설립절차, 회계처리과정, 직원의 소속(대학 또는 산학협력단), 자산(물품 등)관리 방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에서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불가하여 사업추진의 어려움 - 학교기업에서 직접적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산학협력단에서 회계처리가 이루어져 신속한 업무처리가 어려움 - 학교기업에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없어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어려움(대학장 명의의 계산서 발행은 대학 경리과 등에서 관장)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개정·시행으로 2007.1.1일부터 국가기관도 고유번호증 대신 사업자번호증을 발부받아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하나, 사업종목(업태)에 학교기업 사업종목에 대한 반영은 사실적으로 어려운 바, 국세청등과 협의하여 학교기업 사업종목이 적용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함(학교기업에서 입찰 참여시 사업종목, 업태 필요) * 부가가치세법제38조제3항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추진에관한법률제36조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기업운영업” 추가

<표 계속>

문제점	개선방안
	3.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36조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기업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 학교기업에 대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세무서와 협의하면 해석은 상이할 수 있으나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현행 2년간 지원되는 학교기업지원사업으로는 통상적인 기업의 투자 및 실질적인 안정화를 고려할 때 목적달성이 어려움	연차평가결과 독자적인 사업운영 기반확립이 가능한 학교기업에 대하여 기반확립기간(수익분기점)을 5년으로 보아 기존 2년 이외에 추가적으로 3년 이상의 “학교기업활성화사업” 운영

4-3-5. 기타의견

- 학교기업에서 제조제작한 제품의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기업 공동브랜드 사용방안 및 대학간 상호 구매할 수 있는 협력체제 구축 필요
- 산학협력단에서 회계처리가 이루어져 물품구매부터 집행까지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비효율적이므로 학교기업에서 독자적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는 제도 필요
- 수익기반 구조가 확립된 학교기업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지점으로 설치하여 독자적인 기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보상금지급에 대하여 기업실정에 맞게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
- * 학교기업설치·운영에관한규정제10조(보상금의 지급)제2항에 보상금의 구체적 지급기준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학교기업운영세칙으로 정해야 함.
- 학교기업 소속을 산학협력단 산하부서로 설치하느냐 아니면 대학산하부서로 설치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의견

구분	학교부서로 설치할 경우(현행)	산학협력단 산하부서로 설치할 경우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법상 업무처리가 간편(부가세만 대상, 국가기관은 소득에 대하여 면세) - 학교로부터 지원을 받기가 용이 - 학생들의 교육실습이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처리에 일괄성이 있어 조직관리 및 업무처리가 용이. - 수익기반이 구축되었을 경우 사업 확장에 유리 (별도의 산학협력단 지점 등 독립된 사업체 운영가능)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협력단의 회계집행부서와 학교기업과의 업무처리에 혼란 - 산학협력단에서의 자금지원이 어려움 - 수익기반구조가 갖추어졌을 경우 활동 폭이 좁아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법상 업무처리가 복잡(부가세, 법인세 대상) - 수익성만을 추구하여 학생들의 교육실습 등이 용이하지 않음 - 수익이 수반되지 않을 시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움

4-3-6. 제도개선 및 지원 방안 개선을 위한 종합 의견

- 위에서 학교급별로 제시한 학교기업 제도 및 지원방안 개선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학교기업 개선의 전제 조건은 1) 3기 사업 대비를 위한 제도 개선 및 1, 2기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과 보완 방안 점검, 2) 1기 학교기업 중 폐쇄된 학교와 그 원인 규명, 이에 따른 개선 방안 고려 등임.
- 학교기업 제도 개선에 대한 종합의견은 다음과 같음
 - 학교기업을 위한 입지 제한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확대를 인정하는 측면 고려
 - 사업자 등록, 세금 계산서 등의 문제에 대한 확실한 제도 개선 마련
 - 순이익 발생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의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마련
 - 지역 내 동종업체와의 경쟁 상황 발생에 따른 문제 개선 마련
 - 기술지주 회사로의 전이 방안 마련
- 이외에도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 의견을 조합하면 다음과 같음
 - 기존 참여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고려 (인건비 등)

- 학교기업운영에 따른 비정규직 활용에 대한 제도 마련
- 컨설팅 및 회계감사에 대한 문제 개선 방안 마련
- 전국 학교기업협의회의 기능 정립 방안 마련

Ⅲ. 학교기업 운영 실태 및 제도 개선 요구 분석

차 례

1. 현행 학교기업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 분석 · 47
2. 제3기 학교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요구 분석 · 59
3. 제1기 학교기업 운영 실태 분석 · 61

1. 현행 학교기업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 분석

- 현행 학교기업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 분석을 위해 학교기업 소재지 제한 규정 폐지, 학교기업 설립 형태 및 업종 제한 규제 완화, 학교기업의 교육과정과 연계 여부, 학교기업 순수의 배분 및 학교 교비 지출 규정, 학교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에 관해 조사하였음. 이 조사는 단순한 인식 조사가 아니라 학교기업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소수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학교기업 제도 개선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함.

1-1. 학교기업 소재지 제한 규정 폐지에 관한 요구 분석

- 학교기업 소재지 제한 규정 폐지에 대한 요구는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III-1> 학교기업 소재지 제한 규정으로 인한 활동 제약 여부

구분	빈도	백분율
그렇다.	34	40.5
그렇지 않다.	50	59.5
계	84	100.0

* missing value=1

- 먼저 학교기업 소재지 제한 규정으로 인해 학교기업 활동에 제한을 받는지를 조사한 결과,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교기업이 59.5%였으며,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고 응답한 학교기업은 40.5%를 차지하고 있었음.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학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학교도 34개 학교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함.

<표 III-1-1> 학교기업 입지 제한으로 활동에 제약 받는 주요한 사유

구분	빈도	백분율
영업 인허가	7	21.9
판로 개척	11	34.4
기업 협력	3	9.4
인력 확보	3	9.4
학교 기업 증설	6	18.8
기타	2	6.3
계	32	100.0

* missing value=2

- 학교기업 입지 제한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구체적인 사유는 판로개척이 34.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영업 인허가 21.9%, 학교 기업 증설 18.8%, 기업 협력 및 인력 확보가 각각 9.4% 등으로 나타났음. 결과적으로 입지 제한으로 인해 생산한 제품 판매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III-1-2> 학교기업 입지 제한을 완화할 경우, 생산시설 증설 의향 여부

구분	빈도	백분율
있다.	15	30.0
없다.	35	70.0
계	50	100.0

- 학교기업 입지 제한을 완화할 경우, 생산시설을 증설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학교기업은 30.0%에 불과한 반면,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학교기업은 70.0%를 차지하고 있었음.

<표 III-1-3> 학교기업 입지 제한 완화할 경우, 바람직한 허용 가능 범위

구분	빈도	백분율
교지 여부 및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면 허용	36	43.4
소재지와 상관없이 학교가 보유한 교지로 한정	14	16.9
교지가 아니더라도 행정구역 내의 인근지역으로 한정	33	39.8
계	83	100.0

* missing value=2

- 마지막으로 학교기업 입지 제한과 관련하여,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교지 여부 및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3.3%로 가장 많았으며, 교지가 아니더라도 행정구역 내의 인근지역으로 한정하자는 의견이 39.8%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었음. 그에 반해 소재지와 상관없이 학교가 보유한 교지로 한정하자는 의견은 16.9%로 가장 적은 응답을 보였음. 학교기업 입지 제한 규정 완화 범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제한을 두지 않고 전면적인 허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소재지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작용을 우려하여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비슷한 수준이었음.

<표 III-2> 학교기업 매출 증대를 위해 OEM 방식을 허용하는 방안

구분	빈도	백분율
찬성한다.	75	90.4
반대한다.	8	9.6
계	83	100.0

* missing value=2

- 학교기업 매출 증대를 위해 OEM 방식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이 90.4%인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OEM 방식이 전면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음.

1-2. 학교기업 설립 형태 및 업종 제한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 분석

- 학교기업 설립 형태 및 업종 제한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III-3> 적합한 학교기업 설립 형태

구분	빈도	백분율
독립법인	38	45.2
산학협력단 산하 법인	24	28.6
기술지주 회사	12	14.1
현행대로 유지	10	11.9
계	85	100.0

- 적합한 학교기업 설립 형태에 대해 독립법인 형태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45.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산학협력단 산하 법인 형태가 28.6%를 차지하였음. 그 다음이 기술지주 회사 형태가 14.1%,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학교기업이 11.9%였음. 따라서 학교기업 설립 형태에 대해서는 학교 소속보다는 독립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표 III-4> 학교기업 업종 제한으로 학교기업 활동에 제한 받는지 여부

구분	빈도	백분율
그렇다.	10	12.0
그렇지 않다.	73	88.0
계	83	100.0

* missing value=2

- 학교기업 업종 제한으로 학교기업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그렇

지않다라고 응답한 학교기업이 88.0%이었고, 그렇다고 응답한 학교기업은 12.0%에 불과하였음. 전반적으로 현재 학교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의 경우, 업종 제한이 학교기업 활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으나 업종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던 것은 보면, 학교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업종 제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III-5> 학교기업 금지업종 중 완화가 필요한 업종

구분	빈도	백분율
백화점	2	3.8
가사서비스업	3	5.8
대형 소매업	7	13.5
슈퍼마켓	3	5.8
편의점	3	5.8
여관업	1	1.9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3	5.8
중고가구/가전 소매업	2	3.8
건물공급업	3	5.8
찾집	5	9.6
기타 부동산 임대업	3	5.8
욕탕업	1	1.9
영화관/스키장/해수욕장/유원지	6	11.5
세탁업	1	1.9
마사지업	2	3.8
묘지 및 화장업	2	3.8
점술업	1	1.9
개인간병	4	7.7
계	52	100.0

- 학교기업 금지 업종 중에서 완화가 필요한 업종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형 소매업이 1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영화관, 스키장, 해수욕장 및 유원지가 11.5%, 찾집 9.6%, 개인 간병 7.7% 등으로 나타났음.

<표 III-6> 학교기업 금지 업종 완화시 지역내 동종 업종과의 마찰 해결 방안

구분	빈도	백분율
판매 범위 제한	11	15.1
지역내 동종 업종 직업능력개발 센터 역할 수행	10	13.7
지역내 동종 업종 우수 인력을 협약에 의해 양성·공급	16	21.9
지역내 동종 업종에서 필요한 기술이전·지도 및 기술개발	34	46.6
기타	2	2.7
계	73	100.0

* missing value=11

- 학교기업 금지 업종 업종을 서비스업까지 광범위하게 허용하였을 때, 필연적으로 지역내 동종 업종과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역내 동종 업종에서 필요한 기술이전, 기술지도 및 공동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의견이 46.6%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내 동종 업종에 대한 우수 인력을 협약에 의해 양성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21.9%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었음. 또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판매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15.1%이었고, 지역내 동종 업종 직업능력개발 센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13.7%를 차지하고 있었음.

1-3. 학교기업의 교육과정 연계에 대한 요구 분석

- 학교기업에서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인 교육과정과의 연계에 대한 요구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전반적인 결과는 연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음. 그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III-7> 학교기업의 교육과정 연계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	백분율
필요하다.	50	59.5
불필요하다.	34	40.5
계	84	100.0

* missing value=11

- 학교기업의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59.5%가 필요하다는 반응이었고, 40.5%가 불필요하다는 반응이었음. 이를 구체적으로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 III-7-1>과 같음.

<표 III-7-1> 학교급별 학교기업의 교육과정 연계에 대한 인식

구분	고등학교		전문대학		일반대학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필요하다.	12	63.2	23	74.2	15	44.1	50	59.5
불필요하다.	7	36.8	8	25.8	19	55.9	34	40.5
계	19	100.0	31	100.0	34	100.0	84	100.0

* F=6.233/df=2/p=0.045

- 학교급별 학교기업의 교육과정 연계에 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문계 고등학교나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연계가 필요하다는 반응이었으나 일반대학의 경우에는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4.1%인 반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55.9%로 나타나 교육과정과의 연계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III-7-2> 학교기업의 교육과정과 연계가 필요한 이유

구분	빈도	백분율
학교기업의 설립 목적이므로 반드시 강제	24	48.0
학교기업은 교비가 투자되므로, 반드시 연계	23	46.0
기타	3	6.0
계	50	100.0

- 학교기업의 교육과정과 연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48.0%가 학교기업의 설립 목적이므로 반드시 강제해야한다는 의견이었고, 46.0%가 학교기업은 교비가 투자되므로, 반드시 연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표 III-7-3> 학교기업의 교육과정과 연계가 불필요한 이유

구분	빈도	백분율
학교기업은 교원의 기술을 사업화하는 목적도 있으므로	13	40.6
교육과정과 연계시 학교기업의 제품 경쟁력 미확보	17	53.1
기타	2	6.3
계	32	100.0

- 반면에 학교기업의 교육과정과 연계가 불필요하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교육과정과 연계시 학교기업의 제품 경쟁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53.1%이었고, 학교기업은 교원의 기술을 사업화하는 목적도 있으므로 연계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40.6%이었음.

1-4. 학교기업 순수익 배분 및 학교 교비 지출 규정에 대한 요구 분석

- 학교기업 순수익 배분 및 학교 교비 지출 규정에 대한 요구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III-8> 학교기업의 인센티브 지급 규정의 필요성 여부

구분	빈도	백분율
필요하다.	38	45.8
불필요하다.	45	54.2
계	83	100.0

* missing value=2

- 학교기업의 인센티브 지급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54.2%였고, 필요하다는 의견이 45.8%로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약간 우세하였음.

<표 III-8-1> 학교기업의 인센티브 지급 규정이 필요한 이유

구분	빈도	백분율
학교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5	13.2
학교기업 보상금은 순수익이 발생해야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으로 적정	29	76.3
기타	4	10.5
계	38	100.0

- 인센티브 지급 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 대해, 76.3%의 학교가 학교기업 보상금은 순수익이 발생해야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이 적정하다는 의견이었고, 학교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13.2%이었음.

<표 III-8-2> 학교기업의 인센티브 지급 규정이 불필요한 이유

구분	빈도	백분율
순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 자원에 맡기는 것이 적합	33	73.3
규제보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	10	22.2
기타	2	4.5
계	45	100.0

- 인센티브 지급 규정이 불필요하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73.3%가 직원, 학생들의 사기진작과 우수인력 확보 등을 위해 순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고, 규제보다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22.2%를 차지하고 있었음.

<표 III-9> 학교기업에 대해 학교 연간 수입 총액의 10%까지 지출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	백분율
축소되어야 한다.	11	13.1
확대되어야 한다.	29	34.5
현상 유지되어야 한다.	44	52.4
계	84	100.0

* missing value=1

- 또한, 학교기업에 대해 학교 연간 수입 총액의 10%까지 지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상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52.4%로 가장 많았으며,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34.5%, 축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13.1%이었음.

<표 III-10> 학교기업에 대한 지원을 학교의 적립금에서 지출해야 한다는 인식

구분	빈도	백분율
찬성한다.	56	68.3
반대한다.	26	31.7
계	82	100.0

- 학교기업은 사업 손실에 따른 위험부담이 수반되므로, 학교의 연간 수입보다는 발전기금 등의 학교 적립금에서 학교기업 지출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68.3%, 반대한다는 의견이 31.7%를 차지하고 있었음. 따라서 학교기업에 투자되는 비용은 위험 손실을 감안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각 학교의 구조에서 교육에 재투자되어야 할 교비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발전기금 등의 적립금을 투자하는 것이 좀 더 학교기업의 목적에 부합된다는 의견이 많았음.

1-5. 학교기업 활성화 및 운영 유형에 대한 요구 분석

- 마지막으로 학교기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와 학교기업 운영 유형에 대해 조사하였음.

<표 III-11> 학교기업에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구분	빈도	백분율
학교기관장의 추진 의지	22	25.9
학교 구성원의 협력	12	14.1
학교의 신속한 행정지원	2	2.4
현행 학교기업 규제 완화	23	27.1
정부의 재정적 지원	19	22.4
세무, 회계 등의 간소화	7	8.2
계	85	100.0

- 먼저 학교기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행 학교기업 규제 완화라는 의견이 27.1%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학교기관장의 추진 의지 25.9%, 정부의 재정적 지원 22.4%, 학교 구성원의 협력 14.1%, 세무, 회계 등의 간소화 8.2% 등의 순이었음. 전반적인 의견은 내외부적인 요인이 조화를 이루어야 학교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아, 사업의 실패와 성공은 중앙 부처의 지원과 단위 학교의 자발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성공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음.

<표 III-12> 학교기업 활성화를 위해 적합한 운영 유형

구분	빈도	백분율
현재와 같이 교육활동과 수익활동을 병행	40	47.6
교육활동 중심의 운영	10	11.9
수익활동 중심의 운영	25	29.8
기술지주회사 형태의 운영	9	10.7
계	84	100.0

* missing value=1

- 또한, 학교기업 활성화를 위해 적합한 운영 유형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재와 같이 교육 활동과 수익활동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47.6%이었고, 수익활동 중심의 운영 29.8%, 교육활동 중심의 운영 11.9%, 기술지주회사 형태의 운영 10.7% 등의 순이었음.

<표 III-12-1> 학교급별 학교기업 활성화를 위해 적합한 운영 유형

구분	고등학교		전문대학		일반대학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현행과 같이 유지	11	57.9	15	46.9	14	42.4	40	47.6
교육활동 중심	5	26.3	5	15.6	-	-	10	11.9
수익활동 중심	2	10.5	8	25.0	15	45.5	25	29.8
기술지주회사 형태	1	5.3	4	12.5	4	12.1	9	10.7
계	19	100.0	32	100.0	33	100.0	84	100.0

* missing value=1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학교급별 특성을 파악하여 보았는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유지 57.9%, 교육활동 중심 26.3%, 수익활동 중심 10.5%의 순이었고,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유지 46.9%, 수익활동 중심 25.6%, 교육활동 중심 15.6% 순이었음. 그러나 일반대학의 경우에는 그 결과가 약간 상이한데, 수익활동 중심 45.5%, 수익활동 중심 42.4%, 기술지주 회사 형태 12.1%로 나타난 반면, 교육활동 중심이라고 응답한 학교기업은 없었음. 또한, 전문대학에서도 기술지주 회사 형태로의 운영에 대한 요구도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학교급별로 학교기업의 운영 유형에 대한 접근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제3기 학교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요구 분석

- 다음으로 제3기 학교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요구 분석을 실시하였음.

<표 III-13> 학교기업 지원 대상으로 적합한 형태

구분	빈도	백분율
학교기업을 선정하면, 해당 학교에는 동 학교기업만 지원	59	75.6
학교를 선정하면, 해당 학교 내 학교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	19	24.4
계	78	100.0

* missing value=7

- 먼저 학교기업 지원 대상으로 적합한 형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존대로 학교기업을 선정하면, 해당 학교에는 동 학교기업만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75.6%이었고, 학교를 선정하면, 해당 학교 내 학교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24.4%에 불과하였음.

<표 III-14> 학교기업 지원에 적합한 기간

구분	빈도	백분율
2년(현행)	9	11.7
3년	23	29.9
4년	19	24.7
5년	26	33.8
계	77	100.0

* missing value=8

- 또한, 학교기업 지원에 적합한 기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5년이 33.8%, 3년이 29.9%, 4년이 24.7%, 2년이 11.7% 등의 순이었음.

<표 III-15> 학교기업 지원 각 항목별 중요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학교기업 시설 및 기자재 지원	4.55	0.60
학교기업 인건비 지원	4.67	0.62
학교기업 현장실습비 지원	3.92	0.99
학교기업 실무연수비 지원	3.67	0.73
공통 교육과정 개발비 지원	3.48	0.94
학교기업 정보공유비 지원	3.14	0.75
학교기업 전문컨설팅비 지원	3.45	0.85
학교기업 상시 업무 상담비 지원	3.23	0.93
학교기업 판로 개척비 지원	4.17	0.86

- 학교기업 지원 항목별 중요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교기업 인건비 지원 4.67, 학교기업 시설 및 기자재 지원 4.55, 학교기업 판로 개척비 지원 4.17, 학교기업 현장실습비 지원 3.92, 학교기업 실무 연수비 지원 3.67, 공통 교육과정 개발비 지원 3.48, 학교기업 전문컨설팅비 지원 3.45, 학교기업 상시 업무 상담비 지원 3.23, 학교기업 정보 공유비 지원

3.14 등의 순이었는데, 학교기업 유지를 위해서는 인건비 및 시설기자재비 지원 등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음.

<표 III-16> 기존 학교기업(1, 2기)에 대한 향후 지원 방식

구분	빈도	백분율
불필요하다.	1	1.3
우수 학교기업에 최소 운영경비 지원	30	39.0
제3기 학교기업에 포함(30% 내외)	46	59.7
계	77	100.0

* missing value=8

- 기존에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학교기업에 대한 향후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제3기 학교기업에 포함하여 30% 내외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9.7%이었고, 우수 학교기업에 최소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39.0%이었음.

3. 제1기 학교기업 운영 실태 분석

- 제1기 학교기업 운영 실태 분석을 위해 제1기 학교 및 제1기 추가 지원 학교 4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기업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음.

<표 III-17> 현재 학교기업 자립도 평가

구분	빈도	백분율
손실이 커 특별한 지원이 없으면 폐업해야 할 상태	5	12.5
수익은 거의 없지만 비교적 운영이 가능한 상태	24	60.0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여 자립이 가능한 상태	9	22.5
기타	2	5.0
계	40	100.0

- 현행 학교기업의 자립도를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수익은 거의 없지만 비교적 운영이 가능한 상태라고 응답한 학교기업이 60.0%로 가장 많았으며,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여 자립이 가능한 상태라고 응답한 학교가 22.5%이었고, 손실이 커 특별한 지원이 없으면 폐업해야 할 상태라고 응답한 학교기업이 12.5%이었음.

<표 III-18> 학교기업 지원 중단 후 현장실습 운영 실태

구분	빈도	백분율
지원을 받을 때보다 활성화되고 있다.	4	11.8
지원을 받았을 때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5	14.7
지원을 받을 때보다 축소되었다.	22	64.7
기타	3	8.8
계	34	100.0

* missing value=6

- 다음으로 학교기업 지원 중단 후 현장실습 운영 실태에 조사한 결과, 지원을 받을 때 보다 축소되었다는 의견이 64.7%로 가장 많았으며,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가 14.7%, 활성화되었다가 11.8%를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지원이 중단된 후 현장실습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음.

<표 III-19> 향후 학교기업 운영 계획

구분	빈도	백분율
조만간 학교기업을 폐업할 계획이다.	2	5.0
그럭저럭 학교기업을 유지할 계획이다.	17	42.5
학교기업을 확장하여 발전시킬 계획이다.	17	42.5
기타	4	10.0
계	40	100.0

- 향후 학교기업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학교기업을 확장하여 발전시킬 계획인 학교와 그럭저럭 학교기업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학교기업이 각각 42.5%인 반면 조만간 학교기업을 폐업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학교기업은 5.0%에 불과하였음.

IV. 학교기업 제도 및 제3기 지원 사업 개선 방안

차 례

- 1. 학교기업 제도 개선 방안 · 67**
- 2. 제3기 학교기업 지원 사업 개선 방안 · 71**
- 3. 제언 · 72**

1. 학교기업 제도 개선 방안

1-1. 학교기업 소재지 제한 규정

- 85개 학교 중에서 34개 학교가 소재지 제한 규정으로 인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판로개척, 영업인허가, 학교기업 증설 등이 가장 많은 제약을 받는다는 의견이었음. 또한, 허용 범위에 대해서 교지 여부 및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43.4%, 교지가 아니더라도 행정구역 내의 인근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9.8%를 차지하고 있었음. 이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학교기업 증설에 대한 요구보다는 생산된 제품 판매를 위한 매장 설치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따라서 학교기업이 학생들의 학교에서 직장으로서의 이행 촉진(school-to-work)과 내실 있는 현장실습의 운영을 위해 학교기업의 설립 목적을 두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제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첫째, 학교기업의 교육활동과 수익사업을 병행하여 추진되는 경우,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기업은 행정구역 소재지(광역시 및 도)로 제한을 두고, 영업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소매점과 같은 부대시설은 제한을 두지 않음. 둘째,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수익활동 중심으로 접근하는 학교기업은 소재지 제한을 두지 않고 전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일반대학이라고 하더라도 현행과 같이 교육활동과 수익활동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학교기업의 경우에는 첫 번째 안과 동일하게 적용 받음.

1-2. OEM 방식 도입

- OEM 방식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이 90.4%이었고, 반대한다는 의견이 9.6%

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OEM 방식에 의한 생산의 경우, 질 관리에 허점을 노출할 수 있으며, 이를 제조물책임제(PL : Product Liability)와 연계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OEM 방식을 도입하되, 일정 정도 OEM 방식에 제한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제품의 품질 관리를 학교기업에서 모든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도입을 허용하는 방안임.

1-3. 학교기업 설립 형태

- 학교기업 설립 형태는 독립법인 형태나 산학협력단 산하 법인에 대한 의견이 전체의 7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III-12-1>과 같이 학교급별로 운영 형태에 대한 요구가 다르고, 학교기업의 생산 품목에 따라 요구하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접근 방법보다는 학교기업의 목적에 따라 설립 형태를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독립법인 형태로 설립하는 것은 관리 주체가 불명확하고, 학교로부터의 행·재정적 지원을 원활히 받기 위해서는 독립법인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음.
- 또한,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제2조 6항에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였으며, 설립 주체는 산학협력단이나 산학협력단이 없는 학교는 학교가 주체가 되어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따라서 학교기업 설립 목적을 획일적으로 정의하지 말고 다원화하며, 그 목적에 맞게 학교기업을 현행과 같이 운영하거나 대학의 경우, 기술지주회사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립 형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1-4. 학교기업 업종 제한 완화

- 학교기업 업종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현재 학교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의 경우,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의견이 88.0%를 차지하고 있으나 향후 학교기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업종 제한으로 학교기업 설립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업종 제한을 완화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업종이나 민간에서 접근하지 않는 업종을 중심으로 학교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학교기업 업종으로 경영하기보다는 학교기업 생산품 판매를 위해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 동종 업종과 겹치는 경우라도 일부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이는 학교기업 소재지 제한 완화와 함께 맞물려 있는 것으로, 학교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지 업종도 함께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학교기업 금지 업종 중 완화가 필요한 업종은 다음과 같음.

백화점, 가사서비스업, 대형 소매업, 슈퍼마켓, 편의점,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중고 가구가전제품 소매업 등 소매업(13개), 찻집, 영화관스키장·해수욕장·유원지 운영업 등 오락문화서비스업(8개), 묘지 및 화장업, 개인간병 등

1-5. 학교기업 교육과정 연계

- 교육과정 연계가 불필요하다는 학교가 전체 응답 학교 84개교 중에서 34개 학교를 차지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나, 고등학교나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교육과정 연계가 필요하

다는 의견이 우세하며 일반 대학의 경우에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함. 이는 앞에서 논의한 설립 형태 및 소재지 제한 규정과 같이 학교급별 및 생산 품목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앞에서 설립 형태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학교기업 설립 목적과 설립 형태에 따라 교육과정 연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수익활동 중심의 기술지주회사 형태로 접근하는 학교기업은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제하지 않고, 현행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기업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1-6. 학교기업 인센티브 지급 규정

- 학교기업 인센티브 지급 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나 필요하다는 의견도 45.8%나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것은 학교기업을 방만하게 운영할 소지가 있으며, 학교기업을 정상화시키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학교기업 인센티브 지급 규정을 학교 자율에 맡기되 순수익이 발생하였을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존속시킬 필요가 있으며, 부처 차원에서는 학교기업 활성화를 위해 순수익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만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함.

1-7. 학교기업에 교비 연간 총 수익의 10% 지급 규정 및 발전기금으로 전환

- 현재 학교기업에 교비 연간 총 수익의 10%까지 지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 현상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52.4%로 가장 많았으며,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34.5%로 나타났다. 그러나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학교 교비의 연간 총 수익이 대부분 학생들

의 등록금이므로, 학교기업에 너무 많이 충당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으로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임.

- 또한, 학교기업에 대한 지원을 학교 적립금에서 지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가 68.3%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과도한 교비 지출이나 학교기업 실패로 인한 교비의 손실은 교육 부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학교 적립금에서 지출하는 것도 허용하고, 적립금이 없는 학교는 현행과 같이 교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함.

2. 제3기 학교기업 지원 사업 개선 방안

- 학교기업을 선정하면, 해당 학교에는 해당기업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80.0%로 나타나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다만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학교기업을 신청할 때, 동일 학교기업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파생 상품이나 유사한 업종이라면 동일 법인으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학교기업 지원 방식은 현행과 같은 형태로 유지할 경우, 지원 기간을 최소한 3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학교기업의 성숙도에 따라 지원 기간 및 자금 활용 영역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성숙도에 따라 이원화하여 지원해 주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신생 학교기업은 3년간 지원하고, 이미 학교기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학교들에 대한 지원은 해당 학교의 사업 계획을 토대로 지원기간과 지원 예산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기존 학교기업(1,2기)에 대한 향후 지원 방식은 우수한 학교기업에 대해 3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되, 지원하는 자금 영역에 제한을 두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나 운영 자금을 지원 등으로 한정하는 것도 한 방법임.

3. 제언

-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개정된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의 산학협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를 설립·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교육과정의 연계보다 신기술 개발을 기반으로 제품생산과 기술이전에 초점을 둔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가 대학에 도입될 경우 현재의 학교기업제도는 체계적인 현장실습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학교기업은 전문대학이나 전문계 고등학교로 한정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학교기업 지원사업의 운영상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회계관리영역임. 「학교기업의설치운영에관한규정」 제9조에는 복식부귀의 원리에 따라 학교기업의 회계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장관계자의 이해부족 등으로 회계처리의 미숙 및 비효율성 등이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금년부터는 제2기 학교기업을 대상으로 회계감사 및 회계컨설팅 등을 고안하여 보완할 계획이므로 문제점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장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공식화되고 표준화된 학교기업 회계처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5), 2005년도 학교기업 지원사업, 서울: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교육인적자원부(2006), 2005년도 학교기업 지원사업, 서울: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성희(2005), 「대학에서의 학교기업 활성화 방안 -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광양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미영(2006), 「학교기업 프로그램과 산학협력 관계에 관한 연구 - 실업계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은희(2003), 「학교기업 운영 실태와 참여 학생들의 인식도 조사를 통한 학교기업 운영 방안 연구 - 실업계고등학교 학교기업 참여 학생들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6), 학교기업 업무 편람
- Gehrke, J. F. (1998). A descriptive study of school-based enterprise programs in support of the california school-to-career pl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La Verne
- McKoy, D. L. (2000). Inside school-based enterprise: Productive environments and enterprising mind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토론

학교기업 제도 및 자원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

이민호·김영일·김근성·김한주

차 례

토론 1 · 77

이민호(경희대학교 한방재료가공 학교기업 운영이사)

토론 2 · 83

김영일(두원공과대학 교수)

토론 3 · 91

김근성(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교감)

토론 4 · 97

김한주(한국신입기술재단 산학협력본부장)

【토론 1】

이 민 호

(경희대학교 한방재료가공 학교기업 운영이사)

1. 학교기업의 정체성(identity) 확립

1-1. 학교기업의 법률 정의

1-1-1. 산업교육및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36조 제1항 :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 및 교직원에게 이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

1-1-2. 학교기업의 설치조건

- ①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
- ② 학교구서원의 의견을 수렴
- ③ 학교기업의 사업활동이 교육과정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됨
- ④ 학생 및 교직원에게 이용을 강제해서는 안됨

1-1-3. 학교기업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른 학교기업의 성격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기업의 성격은

현장실습 결과물(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한적 기업활동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연구·개발 중심의 대학교육과정에서 학교기업을 통한 기업활동경험(현장실습) 까지도 정규교육과정으로 확대함으로써 대학교육에서 실용교육과정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

1-2. 학교기업 현장에서의 갈등상태

1-2-1. “학교 \geq 기업”과 “학교 \leq 기업” 개념 사이의 갈등상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기업의 법률적 정의는 “학교 \geq 기업”의 개념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일선 학교기업현장에서는 “학교 \geq 기업”과 “학교 \leq 기업” 개념이 혼동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개별 학교기업의 설립동기, 학교기업운영의 실질적 주체, 학교 구성원의 학교기업에 대한 인식차이(특히, 학교장의 학교기업에 대한 인식정도), 학교기업의 업종별 특성, 학교급(대학교, 대학, 고등학교)별 특성, 국·공립과 사립학교의 구조적 차이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학교기업제도를 연구하고, 도입·실행하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학교 \geq 기업”의 개념으로 국고지원사업을 통한 학교기업 제도도입과 정착을 유도하고 있으나, 다른 정부부처와 언론, 일반인들은 학교기업 제도를 “학교 \leq 기업”으로 이해하고 그에 따르는 성과(매출액 또는 순이익발생)에 관심을 갖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의 학교기업제도와는 출발점과 사회구조가 다른 중국의 학교기업제도가 널리 알려지면서, “학교 \geq 기업”의 개념으로 출발한 우리의 학교기업들을 일부 정부기관과 언론에서는 “학교 \leq 기업” 개념의 시각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편화하는 기형적 결과를 초래했다.

다행히도 산업교육및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7년 7월 3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2008년부터는 “학교 \leq 기업” 개념의 기술지주회사 제도가 추가됨으로, 기존 “학교 \geq 기업” 개념의 학교기업과 “학교 \leq 기업” 개념의 기술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됨으로, 일선 학교에게는 설립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1-2-2. 기존의 실습교육과 학교기업 현장실습의 갈등상태

학교기업제도 도입 이전에도 학교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실습과목과 실습교육이 수행되었었다. 더욱이 산업체에 파견되어 현장을 경험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또한 존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기업의 현장실습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에 대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학교기업 정체성 확립의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

그러나 학교기업현장에서는 차별화된 학교기업 현장실습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행함으로써 학교기업제도 도입 본연의 목적달성 정도를 평가받기보다는, 학교기업제도 운영의 존립을 좌우하는 기업운영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다.

1-3. 학교기업의 정체성 확립 요건

1-3-1. 교육성 중심의 학교기업과 수익성 중심의 기술지주회사의 차별화

일선 학교기업에서 혼돈된 “학교 \geq 기업”과 “학교 \leq 기업”의 개념이 기술지주회사 제도 도입으로, 각 학교기업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즉, 학생들의 현장실습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기업과 학교의 기술력을 사업화함으로써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지주회사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모두 제도적으로 확립되었다.

1-3-2. 교육성 중심의 학교기업제도 확립을 위한 정부지원 유도

교육성 중심의 학교기업과 수익성 중심의 기술지주회사 제도도입이 명확해짐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의 제3기 학교기업육성지원사업은 학교기업 제도 도입 목적에 부합한 수익성 중심의 학교기업보다는 교육적 효과에 비중 있는 학교기업을 국고지원사업을 통해 육성해야 할 것이다.

1-3-3. 경제적 독립성을 갖춘 교육성 중심 학교기업 선발

교육성 중심의 학교기업이라 할지라도 학교기업이 경제적 독립성을 갖춘 학교기업이 교육성 중심의 학교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학교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교육적 성과를 얻는 것이 학교기업 제도도입 목적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다.

1-4. 제3기 학교기업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제언

1-4-1. 국고지원방향은 학교기업 정체성 확립의 나침반

국고지원사업을 통한 제도도입은 그 목적을 실현하고 제도를 정착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제3기 학교기업육성지원사업 선정 기준은 우리나라 학교기업제도 발전방향의 나침반이 된다.

1-4-2. 학교기업운영을 위한 수익성과 교육성 평가의 우선순위

아무리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학교기업도 이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교육적인 성과와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학교기업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기업을 처음 설립할 때에는 수익 창출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선정하고, 계속되는 학교기업을 평가할 때에는 수익성을 기반으로 교육적 성과(또는 계획)를 중심으로 평가·성정하는 것이 우리나라 학교기업의 올바른 정착을 유도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1-4-3. 학교기업운영 모델 확립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학교기업을 처음 설립하는 경우에는 독자생존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선발하고, 기존의 학교기업은 경제적 성과를 기반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

로 평가 선발하여 우수사례를 축적하는 것이 학교기업제도 확립의 선행요건이 될 것이다. 각
각의 우수사례를 단순히 선발하기보다는 국고지원사업을 통하여 기회의 균등성 보다는 수월
성 있는 학교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학교기업 운영의 본보기를 마련하는 일이 학교제도 확
립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일 것이다.

【토론 2】

김영일
(두원공과대학 교수)

1. 학교기업 제도 설립 목적 및 제도개선 필요성

- 학교기업제도(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는 학생 및 교원의 현장 실습 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이에 따라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는 부서를 학교 내에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학교기업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04년 8월 학교기업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 이는 실제 상황의 기업 운영 활동과 학교 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해 현장 지향적 교육이 가능하며, 학교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기획, 운영, 결산 과정에 학생을 참여시킴으로써 학생의 창업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둠.
- 또한 학교기업 활동 결과 수익이 창출될 경우 이를 ① 교육 활동에 재투자함으로써 학교발전에 기여하고, ②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지급으로, ③ 산학협력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한편 ④ 학교기업의 활성화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와 같은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제1기 학교기업 학교는 2004년 9월부터 2년간 지원되었으며, 40개 학교(대학교 18개교, 전문대학 17개교, 전문계 고등학교 5개교)가 선정 운영되었음. 이어 제1기 추가학교로 선정된 10개교(대학교 4개교, 전문대학 4개교, 전문계 고등학교 2개교)는 2005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운영되었음. 현재 운

영 중인 제2기 학교기업 50개교(대학교 19개교, 전문대학 18개교, 전문계 고등학교 13개교)는 2006년 1월부터 시작하여 현재 2차년도 운영을 하고 있음.

- 현재 제1기 학교기업이 운영을 종료하고 제2기 학교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기업 평가, 운영 결과 보고 등을 통해 학교기업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어 왔음, 학교기업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① 입지 제한 및 업종 제한에 대한 규제 개선, ② 사업자 등록 및 판매, ③ 인센티브 제공 및 지역 내 동종업체와의 경쟁 발생 등에 따른 문제의 개선 요구가 비교적 높았음. 또한 재정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사업 종료 후 ④ 학교기업에 고용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의 추가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한 개선 요구도 빈번했음.

2. 학교기업제도 도입 기본 취지[설립 목적] 충실

- 84개 학교 중 학교기업 소재지 제한 규정으로 인한 활동제약 여부 조사에서는 84개 응답 학교 중 50개교(59.5%)가 활동제약을 받지않는다고 답한것(<표 III-1> 학교기업 소재지 제한 규정으로 인한 활동 제약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85개 학교 중에서 34개 학교(40.5%)가 소재지 제한 규정으로 인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판로개척, 영업인허가에 가장 많은 제약을 받는다는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
- 학교기업 소재지 제한 규정을 폐지하되, 전면 허용으로 인해 또 다른 문제 소지 발생을 방지하고(입학자원 감소로 인한 학생모집에 있어 학교간 심각성 등 고려), 학교기업 설립목적에 잘 부합하도록 노력함.
- 현장실습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교육과정 연계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행정구역 내의 인근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가 보유하고 있는 교지도 포함하여 허용하도록 함.

- <표 III-1-1> 학교기업 입지 제한으로 활동에 제약 받는 주요한 사유로 판로개척(34.4%),영업인허가(21.9%)로 총 66.3%의 높은 애로 사항으로 나타났으나, 당초 학교기업 설립목적에 잘 부합되도록 추진 요망.
- 학교기업제도(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는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 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따라서 학교기업을 운영하는 주체인 학교(대학, 대학교)는 교육과정과 연계된 참여 학생들의 현장실습의 내실화에 보다 신경을 쓰고, 현장실습을 통해 생산된 산출물을 직접 판매하려고 하지 말고, 학교기업의 3대 구성 요소인 ① 생산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생산전문가(Learning by Production, Manufacturing), ② 현장실습 내실화를 위해 교육전문가(Education) 과 ③ 판매(Marketing)를 분리하여 마케팅전문가에게 맡겨, 전문가그룹을 통한 생산, 현장교육, 이윤추구를 극대화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3. 학교기업제도 진입(설립)시 문제점 해결 : 설립 형태 및 업종 제한 완화

□ 학교기업 설립 형태

- 학교기업 설립 형태는 독립법인 형태나 산학협력단 산하 법인에 대한 의견이 전체의 7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III-12-1>과 같이 학교급별로 운영 형태에 대한 요구가 다르므로, 학교급별, 국공립·사립형태로 접근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전문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현행 학교기업지원제도의 도입목적에 잘 부합 : 교과과정과 연계된 교육중심의 현장실습 내실화 및 산업체 기술이전을 위한 정부재정지원 방식 도입 필요], 일부 전문대학 및 일반대학은 수익활동 중심의 기술지주회사형태로 설립·운영을 지원함.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 학교기업 업종 제한 완화

- 학교기업 업종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현재 학교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의 경우,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의견이 88.0%를 차지하고 있음.
- 표준산업분류 총 1,121개 업종중 학교기업 금지업종은 102개(9%)이며 특히, 소매업종은 대부분이 금지 업종임
- 학교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한 소매업종 대부분이 금지되어 있어 학교의 기술을 영업활동으로 연결시키는 데 제약으로 작용
 - ※ 표준산업분류상 ‘의료용 기구 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및 ‘기타 통신판매업’ 등 67개 소매업종이 금지되고 있음
- <개선방안 1단계 > : 금지업종 102개 ⇒ 50개(52개 업종 완화)
 - 현재 금지하고 있는 67개 소매업종중 교육적인 측면이나 사회통념상 수행이 곤란한 사업 15종을 제외한 52개 업종에 대한 학교기업 허용
 - ※ 규제개혁 차관회의 결정('07. 4. 26)
 - ※ 완화업종 : 곡물·육류·수산물·과실·음료 소매업, 의약품 소매업, 의류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사무용기기·운동용품 소매업, 전자상거래 등 52개 소매업
- <개선방안 2단계 > : 학교기업 운영업종을 대학·산업계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미풍양속에 반하는 업종’ 이외에 전 업종으로 확대
 - 완화 업종 확정 후 '07. 하반기 중 관련 시행령 개정 추진

추가 완화검토 예시[29개]	금지업종 [21개]
백화점, 대형소매업, 슈퍼마켓, 편의점,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중고 가구·가전제품 소매업 등 소매업(13개), 차집, 기타 부동산 임대업, 영화관·스키장·해수욕장·유원지 운영업 등 오락문화서비스업(8개), 세탁업(3개), 묘지 및 화장업, 개인간병, 가사 서비스업	담배소매업, 노점, 여관업, 주점업(3개), 건물공급업(3개), 부동산 중개업, 경마 및 경주장·골프장·컴퓨터게임방·전자게임장·노래방·비디 오 감상실·무도장·도박장 운영업, 옥탕업, 마사지업, 점술

4. 학교기업 교육과정 연계 및 현장실습 내실화

- 교육과정 연계가 불필요하다는 학교가 전체 응답 학교 84개교 중에서 34개 학교를 차지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한데, 고등학교나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교육과정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나 일반 대학의 경우에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함. 따라서 앞에서 설립 형태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고등학교나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일반대학의 경우, 기술지주회사 형태로 접근하는 대학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용하고,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대학은 그대로 운영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학교기업 인센티브 지급 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나 필요하다는 의견도 45.8%나 됨. 따라서 학교기업 인센티브 지급 규정을 학교 자율에 맡기되 부처 차원에서는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만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학교기업 성공 요인의 한 요소로 작용됨.)
- 학교기업에 대한 지원을 학교 적립금에서 지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고 68.3%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모색이 요구됨.

5. 제3기 학교기업 지원 사업 계획 및 지원 방향 설정

- 학교기업을 선정하면, 해당 학교에는 해당기업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47.6%로 나타나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다만 새로운 아이টে으로 학교기업을 신청할 때, 동일 학교기업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파생 상품이나 유사한 업종이라면 동일 법인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원기간은 5년이 가장 많으나 이는 기회 형편성 및 확산에 문제가 발생함. 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기간으로 통상 3년을 보고 있으므로 3년 계속 지원이 타당함.
- 기존 학교기업(1,2기)에 대한 향후 지원 방식은 제한을 두지 않고, 공정한 평가기준에 의거 우수 학교로 평가되면 계속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지원방식은 철저히 학교기업 설립 목적에 잘 부합되도록 현장실습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지금까지의 2-5억 학교기업 설립지원방식에서 학교기업의 현장학습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5천만원정도의 현장실습 및 실습운영비 지원형태로 전환이 절실히 요망됨.)

6. 학교기업 고용인력 신분보장을 위해 노동부의 공동 참여

- 학교기업에 고용된 신규 인력과 기존 인력의 고용 문제(비정규직 문제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위해 지금까지의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의 참여로는 역부족하므로 학교기업 고용 인력의 신분 보장과 노사간 분쟁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가 참여하는 형태로 제3기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함.

- 학교(전문대학, 대학)내 유사 보직을 겸직으로 맡아 추진함으로써 학교내에서부터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예; 두원공과대학 내 학교기업사업단장과 창업보육센터장을 겸직시킴으로써 창업보육업체와 학교기업간의 WIN-WIN전략수립과 상생의 발전 전략을 구축할 수 있음.)

【토 론 3】

김 근 성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교감)

1. 서론

1-1. 본교의 학교 기업 현황

우리학교는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사립 전문계 고등학교로서 한국전력공사가 설립한 학교법인 한국전력학원이 출연하였고 한국전력이 필요로 하는 전력기술인의 양성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전기계열 특수목적학교의 지정을 받은 학교이다.

이런 연유로 무공해 천연 에너지인 태양광발전과 전력의 판매, 그리고 강남 지역 초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의 홍보와 교육 등을 목표로 제 2기 학교기업학교로 선정되어 06-07년(2년제)동안 이를 운영해 오고 있다.

학교기업을 운영하는 동안 좋았던 점과 나빴던 점이 함께 발생하였는데, 그것들을 간략히 정리해 드리고자 한다.

(좋았던 점)

- 자긍심, 자신감의 고취(특히 타학교에 없는 시설과 색다른 실습을 하는 것에 대하여)
- 학교 기업단 소속 학생에 대한 인센티브(금년 예산에 편성되어 실시될 예정임)
- 교육과정의 전문성 향상 (교육과정연구, 신기술과 전문적인 실습기자재도입에 따른 연구 및 연구활동, 보조 교재의 개발 등)
- 전문계 고교의 비전 확산

(나빴던 점)

- 관련 선생님들의 격무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 증대 (학교기업 자체업무 이외에도 계속 쫓

아지는 수시 보고 공문 및 감사자료 요구 등)

- 학교 기업 업무와 무관한 주위 동료들의 냉정한 시선과 비협조 (비록 부분적인 현상이라 하여도)
- 희생에 비하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관련 교사 인센티브제도
- 교육적 또는 경제적인 성과가 미약하면 어쩌나 하며 고민하게 되는 중압감

위에 정리한 것들이 단지 본교에서만 생긴 것인지 아니면 그 동안 같이 해온 다른 학교에서도 생긴 것인지는 궁금한 점이며 이에 대한 견해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1-2. 본교 학교 기업이 안고 있는 현안

본교의 생산품인 전력은 학교 밖에 세워진 전신주로 공급 된 뒤 전선을 따라 흘러 인근의 전력 소비처로 송전되어 사용 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전력이 우리 제품의 구매자인데 그 구매 단가는 에너지관리공단의 판정기준에 의해 고가(1킬로와트아우어당 700원대)가 될 수도 있고 저가(같은 단위당 7~80원대)로도 될 수 있다. 이처럼 가격구조가 이원화 된 것은 정부가 친환경 무공해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에 대해 일반 화석에너지 발전보다 10배 정도의 우대 정책을 내세워 태양광 발전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것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의 선진국들이 똑같이 실시하는 친환경에너지 육성책의 하나이다.

본교는 이 정책을 바탕으로 학교기업 계획을 수립하여 전력을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막상 전력 판매 대금을 청구하려는 시점에 커다란 장애가 생겼다. 에너지관리공단 측에서 본교의 전력 판매 대금은 우대 가격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유는 설비자금이 국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본교의 판단은 학교 기업의 국가적 육성 정책으로 당연히 개인 기업이 받는 우대 금액으로 전력이 판매 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본교는 학교기업의 경영 수입면에서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고 본교의 태양광 발전 전력 단가는 현재 석탄 화력 발전소와 같은 발전단가를 받게 될 형편에 처해져 있다.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전문계고교의 국가적인 교육 진흥책으로 추진되는 학교기업 사업이지만 국가의 다른 규정(산자부장관 고시)에 의해 애초의 계획이 많은 부분 좌절 된 상황이다.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자문과 협력을 받아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 된다면 깊은 감사를 드리하고자 한다.

2. 본론

2-1. 학교기업 제도 및 제3기 지원 사업 개선 방안

〈학교기업 제도 및 제3기 지원 사업 개선 방안〉이란 주제에 대한 토론을 위해 사전 자료를 검토하면서 토론자가 먼저 느낀 것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본 주제를 치밀하고 탄탄하게 다루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점이다. 특히 현행 학교기업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 분석인〈설문 조사 결과 분석자료〉는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각 요소가 고루, 적절히 선정되었다고 본다.

다만 전문계고가 참여 인원, 투자예산, 매출액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전체 학교기업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미약하다 보니 설문 내용 또한 전문대나 4년제 대학 중심으로 많이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예를 들어 전문계고 측면에서 볼 때 학교기업을 독립법인으로 할지 또는 산학협력단이나 기술지주회사로 할지 등은 거의 무의미하다. 또 〈학교기업 활동 전임자 제도〉 또한 교사와 소속 학과와의 관계, 동료교사간의 유대관계, 또 학교내에서의 보직 순환 흐름 등을 고려한다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실제로 전문계고에서의 학교 기업 담당교사는 남들이 하는 만큼 거의 똑 같은 수업을 하며 학사 업무도 공동 부담하면서 일과 후의 방과 후 활동이라든가, 토요일 오후나, 방학 기간 등

의 그야말로 자투리 여가 시간을 이용하며 학교 기업에 종사하는 것이 현재의 실태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교 기업담당교사들은 또한 인센티브를 거의 바라지 않고 있다. 방과 후 보충수업과 같이 시간 당 강의 수당액이 지정 된 경우라면 혹시 몰라도, 현재의 학교 기업 활동은 일반 강의와는 달리 일종의 동아리 모임의 형태로 진행되므로 간혹 초과 근무 수당을 받더라도 강의 수당 등은 엄두조차 내기 어렵다. 또 이익금 지급 규정이 있는데 설혹 어떤 학교가 이익금을 발생시킨다 하여도 대학 보다 훨씬 작은 공간에 전교사가 모여 지내는 고등학교의 상황에서 교직원 상호간의 인화나 분위기 면에서, 특별 보상을 받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은 대학과는 다른 고등학교의 특색일 것으로 판단한다.

2-2. 전문계 고교 학교기업을 위한 멘토링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현재 학교 기업 활동을 하는 학교의 많은 전문계고 담당교사가 차기년도에는 업무를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이렇다 할 인센티브는 없고, 업무보고라든지, 감사자료 제출이라든지 잡무에 시달리며 가시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는 중압감 등이 그런 동기가 되고 있다.

한편 직능원측에서 개선책에 관련하여 제시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 된다.

1. 소재지 제한 규정 완화
2. OEM 방식 허용
3. 학교 기업 설립 형태의 다양성 허용
4. 업종 제한의 완화
5. 교육과정 연계성의 강제 정도 조정
6. 인센티브 규정의 존치
7. 교비 중 10% 까지의 출자금 규정
8. 3년 지원 기간제 및 종료 후의 기본금 지원제 실시

본인은 대체로 직능원의 개선책에 동감한다. 특히 1, 2, 4, 8 항에 많은 공감을 보낸다.

생각 같아서는 1부터 8항이 전부 개선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전문계고의 학교기업 측면에서는 위 개선책 중 단 한 조항, 즉 제 8항만이 도움이 될 것 같다. 8항이 개선된다면 현행의 전문계고 학교기업 중 상당수는 장차에도 계속 유지되고, 조금씩 뿌리 내릴 수 있으리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전문계고의 학교 기업은 워낙 연약한 기반에서 시작된 것이라 그 존재가 미약할 수 밖에 없다. 나무로 친다면 한 뿔도 안 될 어린 묘목 같은 존재이다. 이것은 홍수가 범람하는 강둑에 심을 수 없는 나무이다. 적어도 어린 무릎은 되게 커져야 둑 위에 심을 수 있지 않을까? 정책 입안자와 행정 실무진에게 건의하려는 것은 애정과 인내심으로 전문계고의 학교 기업을 배려해주시라는 당부이다. 냉엄한 적자생존의 기업경쟁원리로써 능력껏 해결하라는 방식보다는 친절하고 따뜻한 격려로 멘토링해주는 정책당국의 배려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토론 4】

김한주

(한국산업기술재단 산학협력본부장)

□ 학교기업 제도 현황

- 필요성: 학교기업 제도는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 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학교기업 지원사업: 2004년 8월 학교기업을 통한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기업 운영활동과 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해 현장 지향적 교육이 가능하며 학생들의 창업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둠.
- 학교기업 지원사업: 일반대 33개교, 전문대 33개교, 전문계고 19개교
- 비재정지원 학교기업 : 일반대 10개교, 전문대 8개교, 실업계고 9개교

□ 학교기업 제도 개선 관련 이슈 및 문제점

- 학교기업 소재지 제한규정: 소재지 제한으로 학교기업 활성화 애로
- OEM 방식 도입: OEM 제한으로 양산 확대 등 성장에 애로
- 학교기업 설립형태: 세금계산서 발행 제한 등 영업활동 애로
- 학교기업 업종제한 완화: 업종 진출 영역 확대 필요
- 학교기업 교육과정 연계: 교육과정 연계로 활동 제한
- 학교기업 인센티브 지급 규정: 순수익 발생시로 제한으로 애로
- 학교기업에 교비 연간 총수익의 10% 지급 규정 및 발전기업으로 전환 : 학교기업에 대한 학교의 투자 확대 등에 애로.
- 기타: 학교기업 지원기간 연장 요구 및 우수 학교기업 추가 지원 등

□ 학교기업 제도 개선 관련 의견

- 학교기업 소재지: 학교기업은 교육활동과 기업활동이 연계되어야 존재 의미가 있음. 기본적으로 학교기업은 교지내에 설립함을 원칙으로 하나 원재료의 생산지와 거리 등으로 원재료의 신선도 유지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 허용하나 차량 이동으로 1시간 이내에 위치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함. 영업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소매점과 같은 부대 시설은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음.
- OEM방식 도입: OEM방식은 제품의 질 관리와 핵심적인 기술적 역량을 학교기업이 확보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판단됨. 제조물 책임법과 연계한 책임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질이 낮은 제품을 양산하는 방식은 부적절함.
- 학교기업 설립형태: 학교기업이 독립법인 형태로 설립 운영될 경우 교육과정과 연계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그러므로 산학협력단 산하가 바람직하며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는 학교가 주체가 되어 설립하여야 함. 기술지주회사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 학교기업 업종 제한 완화: 선진국의 예에서 학교기업은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업종으로서 민간에서 접근하지 않는 업종을 중심으로 학교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함. 현재 학교기업들이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의견이 88%를 차지하므로 현행 업종제한 규정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서비스 업종까지 허용하였을 때, 필연적으로 지역내 동종업종과 마찰을 빚을 것임. 제품의 판매 등의 경우에는 학교기업협의회(사단법인)가 도소매 판매 등 활동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임. 07년6월 학교기업의 업종에 대한 규제가 상당부분 완화된 상태이므로 가능한 더 이상의 업종해제는 지역영세업체와의 마찰을 야기할 수 있음. 향후 학교기업에서는 업종선택에 있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단순한 일반적인 업종보다는

학교의 특성화된 사업으로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학교기업 교육과정 연계: 교육과정과 연계되어야 학교기업 설립의 타당성이 보장될 것임. 교육과정 연계가 되지 않는다면 민간기업에서 업종 중복 및 민간영역 활동 위축 등의 이유로 학교기업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질 수 있을 것임. 학교기업의 취지를 볼 때 교육과정과의 연계는 일정부분 유지되어야함.
- 학교기업 인센티브 지급규정: 학교기업 인센티브 지급규정은 학교 자율에 맡기되 순수익이 발생하였을 때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존속할 필요가 있음. 민간기업에서는 순수익이 발생하고 또한 목표매출을 달성한 경우 PS(Profit Sharing)개념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음. 학교기업에서 순수익이 발생한 경우 학교자율적으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한 수준이라고 생각됨.
- 학교기업에 교비 연간 총수익의 10% 지급규정 및 발전기금으로 전환: 교비 연간 총수익의 대부분이 학생들의 등록금이므로 학교기업에 너무 많이 충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으로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이 합리적임. 그리고 적립금에서 지출하는 것은 허용하되 적립금이 없는 학교는 현행과 같이 교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함.
- 기타
 - 학교기업을 선정하면 해당학교에는 해당 학교기업만 지원.
 - 학교기업 지원기간은 2년으로 유지하되 지원2년+ 추가지원 2년+ 기본운영비 지원 2년으로 최대 6년간 지원하는 방식 건의함.

즉, 학교기업중 1기와 2기에 계속 지원을 받은 기업은 3기 선정 평가시 선정이 되면 인건비 위주로 기본 운영비만 지원하는 방안임.

그리고 2기부터 선정 지원된 기업은 3기에 선정시 계속 지원이 가능하며 4기에서는 기본운영비만 지원 받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MEMO